

2006년 2월
박사학위논문

학교급식 식품안전규제의 순응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권성욱

학교급식 식품안전규제의 순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ory Compliance Behavior
on Food Safety Regulation in School Lunch Program*

2006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권성욱

학교급식 식품안전규제의 순응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희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0월 일

조선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권성욱

권성옥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위원 호남대학교 교수 _____

위원 광주대학교 교수 _____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2005년 12월 일

조선대학교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제 2 장 규제집행에 관한 이론적 논의	8
제 1 절 규제집행이론의 검토	8
1. 정부규제의 개념과 대두배경	8
2. 정부규제의 특성	12
3. 정부규제의 정책수단	16
제 2 절 규제집행의 유형	21
1. 공식통제	22
2. 비공식통제	23
제 3 절 규제순응	26
1. 규제순응의 의의	26
2. 규제순응의 요인	33
3. 규제순응의 유형	40

제 3 장 식품안전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42

제 1 절 식품안전규제의 의의 42

- 1. 식품안전의 개념 42
- 2. 식품안전규제의 개념 및 범위 46
- 3. 식품안전규제의 행정체계 51

제 2 절 학교급식 식품안전규제 54

- 1. 위해성 예방 54
- 2. 학교급식 식품안전규제의 내용 58

제 4 장 연구모형의 정립 및 가설의 설정 61

제 1 절 연구모형의 정립 61

제 2 절 가설의 설정 63

- 1. 역할수용과 규제통제 63
- 2. 규제통제와 규제대상집단의 반응 65
- 3. 규제동의의 조절효과 68

제 3 절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71

- 1. 변수의 조작화 71
- 2. 측정 74

제 5 장	실증분석	75
제 1 절	표본의 추출 및 특성	75
1.	표본의 추출	75
2.	표본의 특성	77
제 2 절	측정도구의 검증	80
1.	타당도 분석	80
2.	신뢰도 분석	83
제 3 절	변수의 기술적 통계	85
1.	단일변수의 분석	85
2.	특성별 차이분석	89
제 4 절	모형 및 가설의 검증	111
1.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112
2.	분석모형의 검증	114
3.	가설의 검증	121
제 5 절	분석결과의 논의	129
1.	특성별 차이분석 결과의 검토	129
2.	분석모형 및 가설검증 결과의 검토	132
3.	공공정책 및 이론적 함의	133
제 6 장	결 론	137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37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방향	138
참고문헌	142
<부 록>	설문지	160

표 목 차

<표 II-1>	순응의 발생요인	39
<표 III-1>	국제권장 실행규범의 식품위생 일반원칙	44
<표 III-2>	연도별 섭취장소별 식중독 발생현황	56
<표 III-3>	위생 및 안전점검	60
<표 III-4>	측정항목	73
<표 IV-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77
<표 IV-2>	표본의 특성	79
<표 IV-3>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값 행렬	82
<표 IV-4>	선별된 측정항목과 신뢰도	84
<표 IV-5>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88
<표 IV-6>	연령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95
<표 IV-7>	학력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99
<표 IV-8>	직급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102
<표 IV-9>	직책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105
<표 IV-10>	재직기간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109
<표 IV-11>	특성별 차이에 대한 분석 요약	111
<표 IV-12>	변수간의 상관관계	112
<표 IV-13>	분석모형의 적합도 지수	120
<표 IV-14>	역할수용의 규제통제유형에 미치는 영향성	122
<표 IV-15>	규제통제의 규제대상집단에 대한 영향성	124
<표 IV-16>	규제순응에 대한 규제동의를 조절효과	126
<표 IV-17>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128

그림 목 차

<그림 II-1> 순응과 불응의 유형	40
<그림 IV-1> 연구모형	63
<그림 IV-2> 분석모형	119

ABSTRACT

A Study on the Regulatory Compliance Behavior on Food Safety Regulation in School Lunch Program

kweon, Seng-ok

Advisor : Prof. Park, Hwie-Seo, Ph.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Many administrators and manager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response behavior on food safety regulation in school lunch program and introduce the regulatory management paradigm in their organization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determinants of the individual's regulatory response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group's regulatory response behavior and to apply the government regulation theory as well as food safety regulation theory in the social control context to understand how these factors affect the regulatory response behavior. The research model of the government regulation theory and food safety regulation theory include various constructs based on market failure theory, regulation theory, and safety regulation.

On the ground of government regulation theory and other social control theories, this research suggests the research model and ten

hypotheses to explain regulatory response behaviors. In order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this research developed measurements for each variable. Research constructs are operationalized based on the related literature review and various theories. Questions to measure the role acceptance of the policy target group were adopted from the previous safety regulation studies. Items to measure official control and unofficial control were modified from Jaworski and MacInnins(1989)'s previous work to make them relevant to the regulatory response context. Items for regulatory response behaviors were adopted from the previous studies. The final questionnaire used in the main survey(24 items in total) are shown in Appendix. The questionnaire is carefully ordered to prevent the respondents' common method variance. In the questionnaire, the multiple-item method is used and each item is measured based on a 7 point Likert scale from 'very rarely' to 'very frequently.' To assess the measurement, the data for pretest were gathered from a questionnaire answered early in July in 2005. The sample consisted of 60 school feeding employees from the Gwangju and Chonnam elementary and middle to high school organizations. Of the 60 questionnaire distributed, 51 survey were received and 47 were usable. The final items were decided based on the test of construct validity which is analysed by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and on the test of reliability which is investigated through the usage of Cronbach's alpha.

The main sample consisted of 181 school feeding employees in

Gwangju and Chonnam elementary and middle to high school organizations. The data was gathered by means of a quota sampling in July of 2005. Overall, 400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193 questionnaire were received and 181 were usable. The unit of analysis, for this study, was the individual.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were tested b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ole acceptance of regulatory target group have an impact on the type of regulatory control. Role acceptance as an exogenous variable in the analysis model turned out to be a powerful tool for expecting the regulatory control type of formal control (0.263) and informal control (0.418). This results mean if the regulatory target group admit and support the regulatory authority each other, then some kinds of social association and communication mechanism begin to build up. Likewise, we could infer that accepting the role admit the formal control which is one of the regulatory authority's mission.

In the explanatory powers toward response of regulatory target group from the regulatory control types, the formal control proved to have a statistical significance to the regulatory compliance (0.207) and opportunism (0.516). As the formal control of regulatory authority increases, the regulatory target group seemed to adapt themselves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authority and also increase the opportunism behavior, accordingly. It is confirmed that the informal control variabl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egulatory target group response. Even though the regulatory

authority make an offer a social guidance with consulting to the regulatory target group, the regulatory target group does not seemed to adapt themselves to the change with implement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mediating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variables and responses of regulatory target group, we introduced the regulation agreement as a mediating variable. It is confirmed that the regulation agreement variable seem to have a statistical significant mediating relationship between formal control and opportunism (2.207) and between informal control and opportunism (2.056).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mediating relationship of regulation agreement between formal control and regulatory compliance (1.546) and between informal control and regulatory compliance (1.034). We could infer that the regulatory agreement variable has no mediating relationship between formal control and regulatory compliance as well as informal control and regulatory compliance.

This study provides a meaningful implication on the regulatory compliance strategy having decreased opportunism of regulatory target group on the food safety regulation context.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hat the degree of regulatory acceptance has an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and opportunism in the food safety regulation. It suggests that types of regulatory implementation strategy need to be selective according to the regulatory acceptance level of regulatory target group on the food safety regulation. The regulatory target group shows negative

response to the food safety regulation if they do not agree on. However, the level of opportunism did not show any difference to the types of regulatory implementation in case of their level of agreement is high. Thus, it is need to increase the agreement level of regulatory target group with utilizing the educ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y to the regulatory target group.

Even though this research has drawn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meaningful implications, there are a few limitations. First of all, the use of self-report scales to measure the study variables involves the possibility of common method variances for some of the results obtained. In order to pursue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conceptual model, it would be appropriate to develop more direct measures for regulatory compliance behavior in food safety regulation in school lunch program.

Data of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regionally confined public organizations. The results may not be generalizable due to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unique to those regions.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 need to collect data from various region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1980년대 후반까지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민간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었으며, 이후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현상으로 인식되었다(최병선, 1992: 21). 작은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존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혁이었다.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과도한 정부 개입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8년 4월에 출범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동안의 규제개혁은 규제의 수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규제법정주의의 확립 등 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규제개혁위원회, 1999).

식품위생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규제의 폐지 및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식품위생의 규제는 경제적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규제정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정기혜 외, 2001).

식품위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적당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질 좋은 규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김신·김경희, 2002).

안전규제는 작업장에서의 상해, 환경위험, 비위생적인 식품으로 인한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Morgan, 1994). 그러나 안전규제의 대상자들이 법률과 규제기관의 지침에 순응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대규모로 시행되는 학교급식에서 이러한 규제불응 혹은 기회주의적 행동성향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규제에 대한 연구들은 정부규제의 영향요인(Ausness, 1996; Barrett, 1995), 규제입법기관(Rodriguez, 1994; Rossi, 1997), 규제 그 자체(Lutter와 Morrall, 1994) 등의 분야에서 상당히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규제정책이 집행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집행 과정이 규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Warren, 1997). 규제성과중 규제순응 혹은 기회주의적 행동성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규제정책 환류과정에서 시정조치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급식소의 식품안전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기관의 규제통제과정이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이론 및 식품안전규제이론에 입각하여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 실증분석을 통해 식품안전규제의 이론 정립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 간의 관계에 따라 규제기관의 규제통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집단이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냐를 나타내는 역할수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할수용의 정도에 따라 규제기관은 어떠한 규제유형을 활용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규제기관의 규제유형에 따라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의 규제유형을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공식통제라 함은 규제기관이 법규에 따라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공식통제라 함은 규제기관이 규제대상집단에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언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으로는 순응과 불응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여기서 순응이란 규제대상집단이 정책 또는 법규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불응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대상집단의 불응을 기회주의 행태로 살펴볼 것이다. 기회주의 행태란 규제통제과정에서 통제자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통제의 유형이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인 순응과 불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규제기관의 규제유형이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제기관의 식품위생규제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동의라는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규제통제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성 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공식통제가 규제통제의 성과를 제고시킨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결과도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구체화하는 조절변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규제기관과 정책대상집단의 관계, 규제통제유형,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에 대한 규명으로 설정하였다. 학교급식에서 규제집행기관의 규제유형이 규제대상집단의 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확보의 문제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 또는 중개집행자(intermediary)의 순응과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정책대상집단의 순응확보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은 불응을 포함하여 순응에 관한 일반적 이론까지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분석대상으로 채택된 사례는 우리나라 현행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규제대상집단의 반응행위를 선택했는데, 학교급식정책을 선택한 동기는 식품위생문제가 비교적 정책문제로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집단의 불응이 학생들의 건강위해에 대한 영향이 큰 편이고 불응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이 비교적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설문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의 편의상 정책대상집단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학교급식법상 급식위생 및 안전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집단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종사원으로 나타나 이들을 본 연구의 정책대상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지금까지 수행된 식품안전규제 행위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변수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연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연구를 통한 식품안전규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Brannen, 1992: 4). 질적 조사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식품안전규제 행위의 구성개념들간 관계의 패턴을 거시적으로 탐색하여 선형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였다. 양적 조사로는 구체화된 변수들간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시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증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초·중·등 학교 급식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규제집행기관에 대한 학교급식 종사원의 역할수용 태도가 규제유형을 매개하여 규제대상집단의 반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현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부규제 및 식품안전규제에 대한 이론 등을 검토하고, 연구모형과 가설은 기존의 연구, 개념모형, 그리고 다양한 안전규제이론을 토대로 설정하며, 가설검증을 위한 조작적 정의,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을 기술하였다.

가설검증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나타나는 식품안전 규제대상집단의 반응행위를 설문조사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우선 설문을 위한 측정도구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수회의 수정을 가한 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초·중·고 학교급식 종사원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된 측정도구를 가지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식품안전 규제대상집단의 반응행위를 비롯한 분석

모형의 변수들이 학교급식 종사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2.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량분석, 상관관계분석, t검증을 하였고, 분산분석을 통하여 분산의 동질성 검증, F검증, 대비검증, 그리고 다중비교를 실시한다. 그리고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4.0을 활용하여 선형구조 방정식모형 분석방법으로 선행요인과 규제유형, 그리고 규제반응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규제동의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모형을 검증하고 변수들 사이의 가설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순응연구의 기초이론으로서 순응의 기본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규제집행에 관한 이론, 규제집행유형, 규제순응의 유형 등을 중심으로 기존이론을 조사하여 검토·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식품안전규제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았는데,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규제,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안전규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이렇게 제2장과 제3장에서 고찰한 이론적 내용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이론모형을 구성하고 가설을 도출하게 되었다.

제4장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순응과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하여 도출된 가설의 검정을 위해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해당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제5장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설문지법의 표본추출과정과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는 식품위생업소의 종사자들 즉,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의 방법으로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초·중·등학교 급식종사원을 대상으로 할당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예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설문지를 방문배포하고 일정기간 후에 회수하였다. 응답자는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급식종

사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회수된 설문지는 전산처리에 의해 통계 자료화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제6장에서는 제2, 3, 4, 5장에서의 주요부분을 중점정리하고 특히 제5장의 실증분석결과에서 발견되어진 내용 중에서 순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공공정책 및 이론적 함의를 요약하여 강조하였다.

제 2 장 규제집행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규제집행이론의 검토

1. 정부규제의 개념과 대두배경

가. 정부규제의 개념

정부규제에 대한 정의는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Morrison과 Noll(1980: 7)은 ‘정부규제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의 사회적 배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규제가 실시됨으로써 이전에 가졌던 권리나 재산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금연구역이 확대됨으로써 껌연의 권리가 제약을 받는다거나 오염물질을 마음대로 배출하다가 환경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정부규제는 규제대상집단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권리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집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Meier(1985: 1)는 정부규제를 ‘민간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Mitnick(1980: 4-7) 역시 이와 유사하게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민간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병선(1992: 18)은 정부규제에 대하여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

하여 규제대상집단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폭넓은 의미로 정의하기도 한다. 즉, 정부규제는 그 주체가 정부이며, 그 목적은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질서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규제의 대상, 즉 피규제대상은 규제대상집단과 개인이며, 그들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규제라는 것이다.¹⁾

이런 접근방법에서는 정부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하여, 전자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하여 경제행위자들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후자는 노동, 보건, 위해, 공해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 있는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규제는 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이종범, 1988: 75; 최병선, 1992). 즉 경제적 규제는 소비자나 산업 및 생산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대상집단이나 개인의 경제활동, 즉 사업의 개시, 상품의 생산과 유통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²⁾ 이에 반해 사회적 규제는 규제대상집단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로서 규제대상집단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횡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규제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나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사회적 규제의 예로 환경오염의 규제나 근로자 보호, 소비자 권익증진 등을 들 수 있다(Vogel, 1981: 155-185).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바탕으로 '정부규

1) 그밖에도 정부규제를 '편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모든 정부활동 또는 사규제대상집단의 경영이나 국민생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정부활동'을 의미하는 매우 광의적인 정의(정용덕, 1983: 597-598)와 반대로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에 대해 경제적 물리적 제재를 통해 그 활동을 억제하는 정부의 행위'라는 협의적 정의도 내려지고 있다(안문석, 1987. 12: 3-5).

2)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는 독과점횡포의 방지나 부당이득의 방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산업이나 생산자보호를 위해서는 과당경쟁의 방지나 산업구조조정 등이 해당될 것이다.

제는 정부가 민간의 활동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변화를 가하려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부규제의 대두배경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 독과점, 정보의 불충분, 공공재, 외부효과를 들고 있다(Greer, 1987; Savas, 1982; Davis 외, 1977).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을 추구하는 사회메커니즘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시장이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가 초래되는 경우는 불완전한 경쟁상태에 있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나타났을 때나 정보가 불충분할 때이며, 그밖에도 공공재의 경우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Greer(1987: 24)는 독과점시장이나 정보의 불충분 상태는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만큼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두 가지 요소는 제외하고 식품위생규제와 관련이 있는 공공재와 외부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재(public good)는 보통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며, 그 소비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경이 잘된 공원을 조성하였을 경우 공원의 조성과 동시에 주민들은 이 공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 누구라도 이 공원이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재의 비배타성(nonexcludability) 때문에 무임승차자(free rider)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공공재는 그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가능한 한 비용부담 없이 공공재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한 공공재의 공급은 매우 어려우며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재는 타인의 소비로 인해 나의 소비가 방해받지 않는다. 타인이 공원을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공원을 사용하는데 방해받지 않는다. 이러한 비경쟁적(nonrivalry) 특성 때문에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람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는다.³⁾ 따라서 공공재를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면 할수록 사회적 후생복지가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의 방지도 하나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것은 이로 인한 편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여도 효용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도로, 항만, 교육, 소방, 치안, 상하수도 등의 서비스 역시 민간이 공급하기 보다는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보다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효과(external effect)란 하나의 행위가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나 편익을 제공해주는 경우를 의미한다.⁴⁾ 대표적인 외부효과 중 하나가 바로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대상집단이나 개인의 생산 및 소비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었을 경우 국가는 오염물질

3) 공원과 같은 경우 완전히 비경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비배타성과 비경쟁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는 없으며, 정도의 차이가 약간씩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방지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배타적이고 비경합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편이라고 하겠다. Savas, E. S. (1982).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How to Shrink Government*. Chatham: Chatham House. p. 34.

4) 외부효과가 부정적일 때를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라고 부르고, 긍정적일 때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라고 한다. Davis, Otto A. and Kamien, Morton I. (1977). Externalities, Information, and Alternative Collective Action. in Dorfman, Robert and Dorfman, Nancy S. *Economics of Environment: Selected Readings*. New York: W. W. Norton and Co.

을 처리해야 하는 새로운 비용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대상집단이나 개인은 오염행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원래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와 같은 외부효과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게 되므로 시장기구를 통해서도 적절히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오염행위에 대해 정부는 공해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처벌을 함으로써 오염행위를 억제하게 될 것이고, 규제대상집단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해당상품의 생산비가 상승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공해 또는 무공해 제품개발을 촉진하고 공해상품 생산과정에 투입되었던 자원들이 보다 바람직한 용도로 전용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2. 정부규제의 특성

정부규제의 본질은 사회조직과 운영의 두 가지 기본원리이자 사회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인 시장과 정부의 선택과 조합문제를 핵심내용으로 다룬다는 데 있다(최병선·이혜영, 2001). 이와 같이 규제이론이 시장과 정부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조직 및 운영 메커니즘을 다루는 이론이기 때문에 모든 제도에 대한 연구 특히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는 규제이론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규제와 개혁에 관한 연구가 정치경제학 혹은 비교정치경제학의 대표적이고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규제이론이라고 하면 우선 특정 사회문제를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두지 못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해야 할 이유,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다루는 규제의 원인이론(theory of regulatory origin)으로부터 규제의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고 규제기관은 상반되는 정치적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다루는 규제의 정치적 과정이론(theory of regulatory political process), 규제기관과 관료의 포획(capture) 등 규제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이론, 규제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 이론 등을 주축으로 하는 광범위한 이론체계를 이룬다. 따라서 규제이론이나 규제정책 연구에서는 그 접근방법으로서 정치경제학적 접근, 역사적 접근, 제도론적 접근, 행정학 및 정책학적 접근이 개별적으로 혹은 이것들이 혼용되는 형태로 모두 동원되게 마련이며, 이로 인해 규제의 이론적·경험적 연구는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태를 지닌다.

또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와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유형의 규제가 서로 다른 정치경제학적 속성을 갖고 있어서 규제연구도 규제의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우선 특정산업의 구조와 그 산업에 속한 규제대상집단의 시장행동과 관련되는 경제적 규제의 연구에 있어서는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논란의 핵심을 이루며, 효율성 측면에서나 형평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규제가 도입된 배경과 이유, 또는 그런 규제가 지속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실증적 연구가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제도론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경제적 규제의 대안으로서 시장경쟁원리에 의존한 문제해결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탐색하는 규범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에 비해 대부분 시장실패 요인의 존재에 규제의 정당성 근거를 두는 사회적 규제 영역에서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좀더 합리적인 규제대안을 찾는 규범적 차원에서의 경제학적 연구나 규제의 비효율성을 야기 혹은 지속시키고 있는 배경과 원인에 관한 실증적인 차원에서의 정치경제학적, 행정학적, 정책학적 연구가 주류를 형성한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정부규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를 수정하려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의 행태는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행태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보호규제나 환경보호규제, 산업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는 특정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와는 달리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규제업무 또한 매우 복잡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⁵⁾ 환경규제의 경우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생산과정이나 제품의 물리적 특성 등에 대해 규제하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가 매우 강력한 편이다(Lilley와 Miller, 1977: 53).

둘째, 규제대상은 민간부문의 규제대상집단이나 개인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정부기관이 규제자가 된다(최병선, 1992: 21). 민간부문에서의 자율규제를 위한 조직은 규제의 주체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된다.

자율규제가 정부규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정부규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는데 규제기관의 개입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최병선, 1992: 396-397). 우선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의 자율규제는 업계가 해당산업 내 모든 규제대상집단을 구속하는 일정한 산업기준을 정하여 이를 스스로 집행하는 방법인데, 영화업계가 신규 제작 영화의 등급을 정하는 것이 일례이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되 개입수준이 비교적 낮은 자율규제 방법으로서 민간업계가 자발적으로 산업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되 규제기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이 기술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형태가 있다. 이 보다 정부개입의 정도가 약간 더 높은

5) 규제정책, 그중에서도 환경규제로 대표되는 사회적 규제와 같은 경우 규제대상집단 활동에 새로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적 규제로 인하여 규제대상집단은 새로운 생산방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 만큼 생산 활동의 증가를 초래하여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Peterson, 1985: 376).

자율규제로서 업계 스스로가 자발적인 규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로는 증권업계의 자율규제가 그 예이다. 정부개입이 더 강한 유형은 업계의 자율규제 외에 규제기관이 규칙제정을 통하여 업계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써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일례이다. 끝으로 직업 면허와 공인과 같이 규제기관이 관련 법령에 업계의 자율규제를 규정함으로써 자율규제의 강력한 집행력을 보장하는 형태의 자율규제가 있다. 이상의 자율규제 모두는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반독점 및 공정거래 규제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규제정책은 정책불응자에게 형벌, 면허, 의무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⁶⁾ 규제정책의 내용은 규제받는 행동의 수와 종류, 피규제집단의 특성, 시행상에 나타나는 절차적 제약,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의 유형과 강도 등에 따라 특징 지워진다(Almond와 Powell, 1978: 286-321). 따라서 규제정책은 규제대상집단이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를 거친 법률행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⁷⁾

넷째, 규제정책의 정책대상집단은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두 집단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특히 정부의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반발과 불응은 정책의 목적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규제정책은 피규제자가 스스로 규제받기를 원

6) Lowi(1964 : 678-691, 1972: 00-323)는 강제력을 모든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규제정책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순응확보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7) 모든 법률이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률은 본질적으로 정책과 동일한 점이 많다. 특히 법률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상집단으로 규제될 인간이 있으며 법의 내용을 실현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규제정책은 법률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정정길, 1988: 87).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하지 않는 것으로서 규제정책의 형성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과정에 상당한 정치적 투쟁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안해균, 2002: 360).

4. 정부규제의 정책수단

규제정책, 그중에서도 식품위생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규제의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형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되고 있다. 규제정책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전략과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개입전략과 정책수단들은 규제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부담문제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규제의 문제는 기술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과학기술적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그 국가에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차별적 특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규제정책의 수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에 따라 명칭이나 범위에 있어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Balch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태를 변화시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개입전략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입전략은 학습이론과 효용이론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⁸⁾ 그가 제시하는 개입전략은 정보전략, 촉진전

8) 학습이론은 개인의 사회화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행태적 성향을 취득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법으로 인간의 행태는 자극과 반응간의 결합에 의해 축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극과 반응간에는 강화(reinforcement)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행동은 반복되는 가운데 자극에 의해 강화된다. 자유, 돈, 명예 등과 같은 긍정적 강화요인과 투옥이나 물리적 힘 등과 같은 부정적 강화요인 중에서 학습이론가들은 비강제적인 유인전략을 통해 순응을 확보하려고 한다(강신택, 1981: 226; Neiman, 1980: 21). 학습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자극과 그 반응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효용이론은 개인행동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효용이론에서는 인간은 인간의 이기성 및 효용극대화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

략, 규제전략, 유인전략으로 분류될 수 있다(Balch, 1980: 44-46). 정보전략은 정책이 요구하는 바를 대상집단이 알지 못하여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전략이다. 촉진전략은 정책에 순응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기술, 시간에 대해 그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이 해당된다. 반면에 규제전략은 벌금이나 형벌과 같은 제재를 가지고 순응을 확보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유인전략은 가격기구에 의존하여 대상집단의 재량에 맡기는 전략으로서 정책순응비용을 감소시켜 준다든지 불응시 그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정보전략의 경우 특정한 편익의 이용가능성을 제공해주며 또한 정보비용을 감소시켜둔다는 점에서 일종의 유인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촉진전략 역시 비용부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유인전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탁, 1994: 632).

Mitnick(1980: 342-356)은 규제수단을 명령(directive)에 의한 규제와 유인(incentive)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명령에 의한 규제는 개인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선택을 제한하거나 지시하는 것으로 가장 극단적인 수단인 공규제대상집단에 의한 규제를 비롯하여 법률 행정적 기준에 의한 규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유인에 의한 규제는 대안들의 가치를 변경시킴으로써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만 할뿐 선택자체는 대상자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규제가 없는 자유방임상태, 촉진 장려운동, 보조금, 배출금 또는 수익자부담 조세에 의한 규제 등이 포함된다.

Gerhardt(1969)는 법적규제 및 경제적 유인으로, Brecher와 Nestle(1970: 154-170)은 법적규제, 보조금, 부과금 또는 세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James 등(1978: 215-216)은 환경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수단을 경

서 인간은 형벌에 의한 처벌이 기대되는 잠재이익 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순응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Burrows와 Veljanovsky, 1981: 1; Pyle, 1983, 10-11; Stover와 Brown, 1975: 363-375).

제정책적 수단과 비경제정책적 수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에 속하는 하위수단으로서 조세과세, 오염물질감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오염물질배출권의 판매, 연구개발보조, 정부의 직접생산, 간접규제 등을 들고 있으며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지구제(zoning), 피해자의 격리, 여론의 조성, 도덕적 설득 등을 들고 있다.

Baumol과 Oates(1979: 217-219, 282-283) 역시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정책수단으로서 도덕적 권고, 직접규제, 가격접근, 정부직접투자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직접규제는 다시 배출량 허용수준에 의한 규제, 정해진 과정을 따르도록 하거나 기구설치를 강제하는 것 등으로 나누고 있고, 가격접근에 의한 정책수단은 환경피해에 대한 과세, 보조금지급, 오염권의 허가, 재산권의 배분 등으로 나누고 있다. 정부투자에 의한 정책수단은 피해방지를 위한 설비투자과 재생활동을 위한 투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Dales(1968: 81)는 법적규제, 보조금, 오염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제의 정책수단에 대한 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체로 규제수단은 처벌이나 물리적 강제를 동원하는 법적강제수단과 행정적 제제수단 그리고 보조금이나 부과금 등의 가격기구를 통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본 연구 주제인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한 법적 강제수단과 행정적 제제수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법적 강제수단은 법규정이나 명령, 지시 등에 근거한 강제력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려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식품위험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전 규제제도(ex ante regulation)에 의존

하고 있다. 즉, 벌금이나 체벌과 같은 제재를 사용하여 특정한 행동의 비용을 높이고 사람들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위신의 손상, 오명 등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이용하여 순응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 수단은 의도하는 변화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변화가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Balch, 1980: 56). 즉, 식품오염 및 유해물질에의 노출 가능성을 줄이거나 혹은 노출이 되었다라도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차원의 규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직접규제에 의존하는 근거로는 규제기구인 정부가 식품관련 위협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에 공공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자와 소비자를 포함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식품위험에 대해 더 나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효율적인 위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법적규제에서는 기준설정방식(standard setting)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방식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금이나 사법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식품위험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을 들 수 있다. 식품위생법은 소비자보호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서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안전의 권리를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은 우선 식품 그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자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

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제3조 1항), 찌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된 것 또는 불결한 것, 병육 등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동법 제4조, 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식품위생 및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장은 학교급식과 학교급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의 2)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그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제조 가공업자로 하여금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이를 검사·승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규격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이나 첨가물은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식품위생법 제7조). 특히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준이나 규격을 고시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에 대해서는 그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6조).

이와 같이 명시된 식품위험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은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학교급식의 경우 위생 및 안전점검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의 2 및 학교급식시행규칙 제4조의 2에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조에 의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과 기타 동법의 규정을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동법 제55

조), 사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비위생적인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제도, 가공 또는 조리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그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하도록 명하고 있다(동법 제56조).

제 2 절 규제집행의 유형

규제집행유형은 다양한 분류기준이 존재하나, 크게 네 가지의 유형에 따라 개괄하고자 한다. 우선 규제의 목적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최병선, 1992: 28).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 가격 및 이윤규제, 품질 및 생산량 규제 등 규제대상집단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 이고, 사회적 규제는 환경오염, 근로자보건안전, 소비자권익침해, 근로자차별대우, 기회균등과 같은 삶의 질 확보와 관련된 규제이다. 둘째, 규제의 형태에 따라 정치적 규제와 법적·행정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규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제, 긴급경제조치, 세무조사 등의 규제를 포함하며, 법적·행정적 규제는 법률 제도화된 규제, 인허가, 토지이용 불공정 규제, 행정권 차원의 규제 등을 말한다. 셋째, 규제수단에 따라 명령적 규제와 유인적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명령적 규제는 법과 규칙에 의한 규제를 의미하고, 유인적 규제는 보상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순응을 확보하려는 규제이다. 넷째, 공식적·비공식적 규제

로써, 공식규제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존하는 규제를 말하며, 비공식 규제는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간의 유대관계에 기초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규제집행유형을 공식규제·비공식규제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식통제

일반적으로 인간은 그들의 관심사에 따라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통제이론에서도 집단 또는 개인은 사회적 도구적 관심사에 따라 조직화하게 된다고 본다(Heide, 1994; Jarworski, 1988; Mcneil, 1980; Ouchi, 1979; Williamson, 1991). 정부규제에 있어서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 사이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둘 수도 있고 도구적 관계에 바탕을 둘 수도 있다. 상호관계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들간의 커뮤니케이션, 결속, 그리고 통제의 토대가 달라진다(Meyer와 Allen, 1991; Mohr 외, 1998). 공식통제라 함은 규제기관이 법규에 따라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공식통제는 규제기관이 규제대상집단에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언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비공식통제과정은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 공식통제과정은 도구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그들의 공동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Granovetter, 1985; Ouchi, 1979). 이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공유된 목표, 융통성, 상호성, 관용, 기타 상호관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패턴이 개발되며(Black, 1998; Kaufman과 Stern, 1988), 이러한 사회적 패턴들은 보상과 처벌시스템, 통제자의 법적 권력, 규제내용의 의사전달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안전규제의 비공식통제는 규제자와

규제대상집단 사이에 정립된 사회적 패턴에 의존하게 된다(Ellickson, 1987). 실체규칙은 어떤 장소에서 감시기간에 감사원의 사회지도를 통하여 비공식적으로 적용된다(Laufer와 Robertson, 1997). 감사원은 규제대상집단에게 조언을 해주고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규제의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 숙지시키게 된다. 더욱이 비공식통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은 서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 규제기관은 집행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다.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 사이의 도구적 관계는 기능성, 경제적 이익, 요구된 과업의 집행, 가시적 성과의 달성 등과 관련된다(Kanter, 1972). 공식통제는 행태기준과 같은 범규에 의존하며 법적 권위에 토대를 두고(Black, 1976), 실체규칙과 지원규칙들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다(Black, 1998; Jaworski, 1988). 공식통제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규칙과 지원규칙들이 적절한 행태가 무엇이나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이 되며, 감시기간에 규칙으로부터의 이탈행위가 발견되면 재량행위는 거의 고려되지 않으며 규정들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2. 비공식통제

비공식통제는 규제기관이 규제대상집단에게 규제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언과 정보제공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규제를 말한다.

시장실패의 주요한 형태의 하나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생산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공정, 보관기간, 속성 등과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역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규제정보의 제공 및 교육, 제품표시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상적인 수단이며 공공교육 프로그램과 정보공개, 그리고 설득에 의한 방법이 정보에 근거한 대표적인 비공식통제이다.

공공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기금으로 광고를 이용하거나 유인물 등을 만들어 소비자나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시키는 방안이다. 공중 보건이나 안전과 관계된 에이즈 캠페인, 금연 캠페인, 교통안전이나 현행법에 대한 순응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이 공공교육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이다. 규제대상집단, 소비자, 시민, 노동자 등 규제대상집단들이 규제에 잘 순응하지 않는 것은 규제를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OECD, 1997: 38).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공공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 집단을 쉽게 확인하고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가 경제적으로 유포되어야 한다.

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는 공공교육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구별되는 측면도 있다. 이 대안의 대표적인 유형은 제조업체로 하여금 생산물의 속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는 직접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일반대중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개를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요구되는 사적인 정보공개와 정부가 정보를 취합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공적인 정보공개를 들 수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정부에 의한 정보출간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교통부는 상업항공사들의 정시도착

실적 등을 공표한다. 이 공표제도는 항공사들이 그들의 스케줄을 지키도록 하는 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비현실적으로 과장되거나 조작된 일정을 발표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설득에 의한 접근(persuasive approaches)은 정보에 근거한 비공식통제의 변형된 형태이다.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적인 합의가 불충분할 때나, 규제가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설득에 의한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음주운전의 방지, 에이즈 확산의 차단, 흡연의 감소, 에너지의 보존, 인종차별의 금지, 사스 또는 조류독감 확산의 차단 등과 같은 영역에서 효과적인 설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최근 OECD 문건도 정부 정책으로서의 설득이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강제적인 수단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통상적으로 규제대상집단이나 개인들은 공공재를 보전하고 증진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때문에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하여 민간에게 변화를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처럼 규제기관의 바람직한 통제형태는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수용도에 따라 순응 또는 불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 임무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역할수용을 규제대상집단이 규제기관의 활동과 행위를 인식하여 지원하는 정도로 정의한다(Blake, 1976; Ellickson, 1991). 즉, 역할수용은 규제대상집단이 산업감시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규제기관의 감시활동을 인정하고 규제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바람직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역할수용은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 간에 공유가치가 있다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제 3 절 규제순응

1. 규제순응의 의의

가. 규제순응의 개념

순응과 불응은 정책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은 하향적이고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본래의 목적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정책집행과정에서 이들 행위자들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인적 자원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의 관리 및 조정을 통해 정책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ardach, 1979: 57). 따라서 정책집행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복합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의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반응행태가 어떠한가는 곧 정책의 효과적 달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들 집단의 반응행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즉 순응과 불응(compliance and non-compliance), 동조(confirmity), 수용(acceptance), 지지(support), 관여(involve)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의미의 비교를 통하여 순응과 불응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조는 겉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규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Duncan(1982: 192)은 순응과 수용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그는 순응과 수용을 일종의 동조현상으로 파

악하고 있으나 순응이란 외형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특정한 규범이나 규칙에 일치할 때 일어나는 반면, 수용은 외면적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가치나 태도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Festinger(1953: 232) 역시 동조를 순응과 개인적 수용으로 구분도 있는데, 순응은 집단이 요구하는 행동규범에 따르는 것이며, 개인적 수용은 개인의 태도와 신념이 집단의 태도와 신념과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용은 정책에 대한 대상집단의 주관적 평가와 기대의 표현으로서 외면적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 가치체계의 변화까지를 포함한다(허범, 1982: 220). 즉, 수용은 외면적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 가치체계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지는 정책에 부과되는 비용, 대상집단의 사회화과정에 내재하는 태도, 정책이 적용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단기적 인식태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Gatlin, 1978: 986). 관여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과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정책관여라고 하는 것은 대상집단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대상집단들의 정책집행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김병준, 1985: 313).

이러한 개념들에 비해 순응이라는 것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설정된 정책지침이나 지시 등에 일치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이며, 반대로 불응은 그러한 규정과 불일치하는 행동을 의미한다(Cooms, 1981: 53-60). 정책수용이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특정 규범이나 규칙에 일치하는 것임에 비해 순응은 외면적 행동의 일치만을 뜻하고 있다. 즉, 순응은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며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순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정정길, 2000: 653).

Young(1979: 5)은 순응을 특정상황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행동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반응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복종(obedience)은 특정 상황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권위적 인물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순응과 유사한 용어로 합의(consensus)를 들 수 있는데 합의란 둘 이상의 행위주체들간에 관점의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인위적 의식적 노력과정을 통해 조성된다(Etzioni, 1968: 469). 그러나 합의가 조성되었다고 해서 특정규칙이나 법률에 항상 일치하는 행동이 유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순응과는 구별이 된다.

불응을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정책이나 지시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정책집행자의 입장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으나(안해균, 2002: 360), 반면에 불응을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여 정책집행자와 대상집단 모두를 포괄하기도 한다(정정길, 2000: 653-654).

순응과 불응은 정책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책결정자들이 정한 정책 및 제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책집행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일치된 행위를 보이는지의 여부가 곧 순응과 불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순응과 불응에 대한 개념은 주로 정책집행자와 대상집단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순응을 확보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전제가 되며, 결국에는 정책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지침으로서 정책은 가치의 표현이며 협상의 초점인 동시에 조직 활동을 형성하는 전제가 된다(유훈, 1986: 11). 따라서 정책집행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기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응과 불응의 주체 역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법적 권위와 책임,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행위자, 즉 정책집행자들은 순응과 불응의 주체가 될 수 있다(Giles와 Gatlin, 1980: 742). 정책집행자들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합법적인 권위와 책임, 공공의 자원 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책의 목표달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이들은 정책집행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책집행자들의 순응여부는 정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van Horn과 van Meter, 1976: 46).

둘째, 어떤 정책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피규제대상인 정책대상집단 역시 순응과 불응의 주체가 된다.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받는 집단으로서 개인, 집단, 국민전체 등 정책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그 범위가 모호할 수도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혜택을 받는 집단은 정책대상집단에서 제외하고 적절한 공중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민진, 1985: 225). 특히 정책불응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혜자들이 정책대상집단이 되는 분배정책보다는 피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피규제대상이 정책대상집단이 되는 규제정책의 경우라고 하겠다. 규제정책의 경우 대부분 피규제대상은 특정한 규제에 부응하는 일정한 행동이 요구되는 만큼 활동의 제약이나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를 바탕으로 순응과 불응행태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려보면 순응이란 정책집행자나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적 지시나 규칙에 대해 외형적으로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불응은 일치된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규제순응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문제는 정책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책집행에 대한 용어의 통일은 Pressman과 Wildavsky의 저서 「집행론」(Implementation, 1973)이 출간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집행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상이함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Pressman과 Wildavsky(1973: 14-15)는 정책집행을 목표설정활동과 목표달성활동 간의 상호작용이며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인과관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van Meter와 van Horn(1975: 447-448)은 정책집행을 정책결정에서 미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의 개인 및 집단이 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행위성과 목표지향성 외에 정책집행에 관여하는 개인 및 집단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Reply와 Franklin(1982: 4)은 정책집행은 다양한 행위자들, 특히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사업계획을 실시하는 관료들에 의한 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밖에도 정책집행을 정책의 의도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정책내용을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점과 더불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는 지적도 있다(정정길, 2000: 545).

정책집행에 대한 이상의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살펴보면, 정책집행은 정치적 성격의 정책환경과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초의 정책목표와는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자체의 행동규범과 기준에 입각하여 계속적인 결정과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정책결과 사이를 이어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

책집행 과정은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과정에는 다양한 중간집단 및 매개집단이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정책결과와 관련하여 정책대상집단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정책집행자와 더불어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의 목적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정책대상집단의 순응확보 여부는 정책집행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Stein(1984: 126-127)은 정책집행은 순응과 영향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정책집행에서의 순응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정책은 사람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적 차원의 규칙이나 목적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정책에 대한 순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람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려 할 때, 그리고 기대되는 행동을 그만두려 한다면 그만큼 정책의 효과는 감소될 것이며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Anderson, 1984: 120-121). 따라서 정책집행과정에서 순응을 확보하고 불응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일은 핵심적인 일이라 하겠다.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이란 그 집단의 외형적 행동이 정책의 집행이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명령, 지시, 정책지침, 규정 등에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이 순응하고 있는지 불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론상으로 볼 때 순응의 정도는 실제의 순응행동과 가능한 전체 순응행동과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나(Young, 1979: 104),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적 지시나 명령, 규칙에 순응했는지 불응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많은 경우에 정책대상집단

은 순응 또는 불응의 선택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응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책대상집단의 부분적 순응이나 형식적 순응도 가능하다. 따라서 순응과 불응의 판단이 현실적으로 용이한 것은 아니다.

정책대상집단이 불응을 하는 경우 나타나는 양상 또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정책대상집단 전체가 불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소수만이 불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책대상집단이 다수이고 어떤 정책에 대해 이들 간의 상호조정과 합의가 있어야 정책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응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정책대상집단간의 의견조정과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지 못하게 되면 정책집행은 그만큼 어려워 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집행과정에서 순응을 확보하는 문제는 과거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권위의 계층성과 관권이 강조되어 정책의 집행과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김병준, 1984: 492). 권위주의적 정책집행의 관행과 더불어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교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문제는 중요시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국민들이나 사회 각 계층의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증진되고 또한 자기의 목소리를 내세우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정책과정상의 불응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발생, 원자력발전소나 쓰레기장건설과 같은 오염발생시설의 설치반대와 특정정책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농성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책집행과 순응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규제순응의 요인

모든 정책은 정책대상집단의 행태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을 통제하려고 한다. 만약 정책에 대한 순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책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람직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순응과 불응행태의 발생요인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순응의 요인과 불응의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derson, 1984: 101-105).

가. 규제순응의 요인

순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Young(1979: 18-25)은 자신의 이익, 법적 강제, 유인, 사회적 압력, 의무감, 습관이나 관례 등을 순응의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Anderson(1984: 101-103)은 권위에 대한 존경, 정책의 정당성, 개인적 이해관계,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 제재,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Meier와 Morgan(1982: 260-262)은 환경요인, 강제요인, 태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Rodgers와 Bullock(1976: 4-5)은 법의 명료성, 처벌의 확실성과 강도, 법의 정당성, 강제성, 정책에 대한 찬성, 강제적 집행기관의 존재여부 등을 순응요인으로 들고 있다. 그밖에도 정당성, 제재, 보상, 강제력, 개인적 친화 등이 순응의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순응요인들에 나타나 있는 공통적인 요인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권위는 순응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권위는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는 권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떤 정책이나 제도, 법 등에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동의할 때 순응하게 된다(이상안, 1989: 59). 권위에 대한 존중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마음속에 형성된다. 즉,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법에 복종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적절하다는 믿음을 형성하여 왔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은 부끄럽고 죄가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관습의 힘과 은영 중에 형성된 법과 정부에 대한 존경심은 정책에 대한 순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는 정책의 정당성을 들 수 있다. 정당성이란 가치에 대한 이해 또는 가치형성과 관계된 개념으로 규칙이나 명령, 지시 등이 행위주체의 가치와 조화·양립될 수 있을 때 나타난다(Deutsch, 1980: 12-13). Anderson(1984: 105-106)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Young(1979: 23)의 ‘의무감’ 등은 권위의 원천이 되는 정당성 및 규범성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Meier와 Morgan(1982: 260)은 정책의 정당성을 믿는 신념으로 인해 순응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규범적 가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자발적 순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자발적 순응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한 것이어야 하며(Etzioni, 1968: 355),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Elmore(1978)는 정책집행의 성공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정책에 대한 협상과정의 존재 유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Kerr(1976)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가 제한되면 정책은 규범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어 정책은 실패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권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당성이 순응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순응주체가 어떤 정책이 헌법에 근거했거나 합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거나, 또는

정책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는 개인적 이익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이나 집단은 정책규범이나 기준의 수용을 통해 직접적인 편익을 얻는다. 즉, 어떤 정책의 집행에 따라 개인적인 이득이 증진될 수 있을 때 순응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불응시의 비용보다 순응시의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적 이익이라는 것은 외부적 강제나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 이해득실 판단에 따라 순응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이다.

정책대상집단 가운데 이윤추구 동기가 강한 집단일수록 비용과 편익에 따른 순응여부가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비정상적 경제활동, 예를 들어 오염물질을 몰래 방출하는 경우에 이러한 순응기제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상적 활동에 의한 이익추구와 비정상적 활동에 의한 이익추구는 상대적 교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벌금이나 체포 및 다양한 제재 등 처벌가능성 또한 순응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처벌가능성은 순응과 불응에 대한 개인들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계산에 외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Pyle, 1983: 10-11). 즉, 외부적인 강제의 행사에 의하여 순응과 불응에 대한 비용편익 계산에 변화를 발생시켜 순응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위법자들은 범법자들에 비해 범죄행위에 대한 발각위험이나 양심의 가책, 처벌가능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Jensen, 1968). Anderson(1984: 103)은 사람들이 처벌의 위협 때문에 정책에 순응할지는 모르지만 처벌의 주요 역할은 다른 순응요인을 보강하고 보완시켜주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것은 Anderson이 자발적인 즉 비강제적인 순응에 의해 정책의 효과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비강제적 순응요인에 대해 중시하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 규제정책

에서는 강제적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는 경제적 유인 또한 순응에 기여를 하고 있다. 개인은 제재 및 유인이라는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해 순응을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유인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처벌과 마찬가지로 비용과 편익에 대한 기대치에 변화를 주어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처벌이 불응에 대한 기대가치를 낮춰주는 수단인 반면, 경제적 유인은 순응에 대한 기대가치를 높여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Young, 1979: 21).

여섯째, 사회적인 압력은 개인의 순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니 만큼 사회적 압력이나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개는 사회규범이나 집단규범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정책내용이나 그 규범에 순응을 강요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학교급식 위생 규제에 있어서도 급식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문제제기로 인하여 정책 집행자나 대상집단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밖에도 순응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불응이 간파되고 성공적으로 기소될 확률, 불응에 대한 처벌의 강도,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대상집단의 태도, 대상집단의 순응비용 등을 들 수 있다(Mazmanian 과 Sabatier, 1981: 21-23). 특히 불응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처벌이 부과될 확률은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제재의 다양성이나 강도, 불응감시인력, 대상집단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나. 규제불응의 요인

정책집행과정에서 관련된 행위자들의 불응은 전술한 순응요인이 부정

적으로 평가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밖의 요인으로도 불응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불응의 발생요인으로 Coombs(1981)는 의사전달상의 장애, 자원의 부족, 정책자체에 대한 불신, 권위의 결여, 행동상의 불응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Anderson(1984)은 법 가치에 대한 갈등, 법조문의 모호성과 복잡성, 이기적 욕구 등을 들고 있다. 그밖에도 정책의 비현실성, 정책의 비밀관성,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 적용상의 자의성, 그리고 정책의 소망성이나 명료성이 부족할 때, 기존 가치체계와의 대립, 정책기준의 비밀관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정정길, 2000: 657-664). 이상과 같은 불응요인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책의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불응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의 불응은 자신이 불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뚜렷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사람들이나 규제대상집단들은 특정한 행동이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가 기소된 뒤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불응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책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분명하지 못할 때, 정책내용에 대한 의사전달과정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정책내용에 대한 의사전달상의 장애는 지나친 전문용어와 같은 언어상의 장애,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대상집단간의 준거기준의 차이, 전달자와 수용자간의 지위 및 거리상의 차이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상집단의 저항이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둘째,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더라도 그 정책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역시 불응이 발생한다. 정책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는 정책집행자나 정책대상집단의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할 때이다. 여기에서 능력부족이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이나 노력부족으로 인하여 정책수행역량

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자원의 부족은 조직적 차원에서 경제력이나 기술, 정보, 시간 등이 제약을 받을 때를 말한다.

셋째, 전술한 두 가지의 경우와는 달리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고의적으로 불응이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개인의 이익과 상충되는 정책일 때, 도덕이나 가치체계와 갈등을 유발할 때, 정책의 목표나 수단에 대해 회의나 불만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한다. 정책의 목표나 수단은 수용하고 인정하지만 정책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이 심리적 부담이나 경제적으로 비용을 초래할 때 역시 불응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정통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거나 정책집행자와 대상집단간의 적대적 인간관계 역시 불응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응의 개념을 기회주의 행태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회주의는 통제자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통제자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을 말한다(John, 1984). 규제상황에서 기회주의는 규칙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안전기준의 위반을 숨기거나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회주의는 기회주의 행태가 의도적으로 법적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순응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기회주의는 자주 발생하지 않더라도 규칙의 준수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점검 및 조언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또한 규제대상집단들은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편의시설의 재설계, 과정의 리엔지니어링, 성분의 재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들게 된다.

이상에서는 순응과 불응의 발생요인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그러나 순응과 불응은 표리의 관계에 있는 만큼 상호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순응과 불응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은 정책의 순응이나 불응의 발생요인을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순응과 불응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취급하여 정책과 관련된 요소로 정책의 소망성, 정책의 명료성과 일관성,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요소로서는 정책집행자의 태도와 신뢰성,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정통성, 집행관료의 인식, 순응주체와 관련된 요소로서는 순응주체의 능력, 의욕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정정길, 2000: 658-664). 그 외에도 정책과 관련된 요소로 정책의 소망성, 일관성, 명료성, 행태변화의 크기, 강제성, 정책담당자와 관련된 요소로서는 정책담당자의 권위와 능력 및 태도, 대상집단과 관련된 요소로서는 대상집단의 성격, 능력, 참여도, 조직화, 개인적 이익, 환경적 요소로서는 정치, 사회환경, 여론의 방향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술한 순응과 불응의 발생요인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요인들은 정책 관련 요인, 정책집행기관 관련 요인, 정책대상집단 관련 요인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순응의 발생요인

구분	내용
정책 관련 요인	정당성, 효과성, 인지도, 수단의 적절성, 일관성, 공정성
정책집행기관 관련 요인	보유자원, 관련기관간의 업무협조, 관련기관간의 정책적 동조성, 정책집행의 적극성
대상집단 관련 요인	보유자원, 경제적 유인, 정책신뢰도, 사회적 압력, 적발가능성, 처벌강도

3. 규제 순응의 유형

순응이라는 것이 특정한 규칙에 대한 행동의 일치이고 반대로 불응은 불일치된 행동이라고 해서 양자가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규칙에 대한 행동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또 부분적 순응이나 잠재적 순응의 형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순응과 불응은 뚜렷이 구별되는 개별의 행태라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상의 양극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정정길, 1989: 564-565).

순응과 불응의 행태를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보고 순응과 불응행태의 유형을 도식화하여 보면 다음의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순응과 불응의 유형

<-----순응과 불응의 연속선----->			
불응	잠재적 불응	잠재적 순응	순응
불응행태		순응행태	

이상에서 살펴본 순응과 불응의 행태를 종류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에 대한 순응을 보이는 경우는 규제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규제받는 것에 대해 당연시하는 경우이다. 즉 규제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자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따르는 것으로, 규제에 대한 인정정도에 따라 순응행태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적극적인 순응은 규제에서 요구하는 지침이나 행동에 일치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인 반면, 소극적인

순응은 규제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처벌이 두렵다든지 규제에서 요구하는 행동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순응정도가 미미한 경우이다.

둘째, 규제에 대한 불응의 정도 역시 적극적 불응과 소극적 불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불응은 규제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와 규제에는 일단 순응하지만 규제의 목적이나 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로비를 하거나 규제철폐운동을 벌이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소극적인 불응은 외면적으로는 순응하는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언제든지 불응행태를 보일 우려가 있는 잠재적 불응의 경우, 규제내용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를 위반하게 되는 과실적 불응의 경우, 그리고 규제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불응하게 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 3 장 식품안전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식품안전규제의 의의

1. 식품안전의 개념

일반적으로 식품이란 사람이 일상 섭취하는 음식을 말하는데 백과사전에서는 “영양소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함유하고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천연물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공 공정을 거쳐 직접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식품이라 하고, 이에 비하여 직접 섭취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을 식품재료 또는 식료품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⁹⁾ 그리고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생이란 사전적 의미는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힘쓰는 일”을 말한다.¹⁰⁾ 식품위생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에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의 채취·제고·가공·저장·포장·운반·판매·조리·소비 등의 여러 과정은 물론 식품에 접하는 기물·취급인·영업에 사용되는 설비·시설의 위생관리 등 각종 위생활동”이라고 정의하며,¹¹⁾ 식품위생학에서는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와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장판식·곽덕희, 1999).

9)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2003).

10)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2003).

11)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7.

WTO 환경위생전문위원회는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인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safety), 완전성(wholesomeness) 및 건전성(sound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식품위생으로 정의하고 있다(오원택, 1996: 3).

식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유통체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필수적인 식품위생 원칙을 말한다. 그 범위는 일차생산에서부터 최종섭취에 이르기까지의 식품유통체계에 따른다. 그리고 식품의 유통체계에서 정부, 업체, 소비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식품으로 인한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적절하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을 섭취하기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교역되고 있는 식품의 신뢰유지를 하여야 하고, 식품안전의 원칙을 업계 및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관련 업체는 안전하고 적합한 식품을 제공하고, 표시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정보를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저장, 취급, 조리하도록 하여 그들의 식품이 오염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 및 발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교역되고 있는 식품의 신뢰유지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표 III-1> 국제권장 실행규범의 식품안전 일반원칙

구분	일반원칙
일차생산	<p>▷식품이 그 사용의도에 맞게 안전하고 적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위험요소 유입가능성을 줄임</p> <p>-환경위생 : 환경오염 지역에서 식품원료를 생산하지 않음</p> <p>-식품재료의 위생적 생산 : 일차생산에 사용되는 제재 및 분뇨 등 오염물질 관리를 통하여 식품재료 보호</p> <p>-취급, 저장 및 운반과정에 오염으로부터 식품 및 식품성분 보호</p> <p>-일차생산에서의 세척, 유지 및 개인위생 유지</p>
시설 : 설계 및 설비	<p>▷작업의 성격 및 관련되는 위해에 따라 건물, 제조장비 및 설비의 설치·설계 및 구성</p> <p>▷우수한 위생설계 및 구조, 적절한 배치, 그리고 적절한 설비에 대한 규정이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필요</p> <p>-배치(시설 및 장비), 건물 및 작업장(설계 및 레이아웃, 내부구성 및 맞춤, 임시/이동 건물 및 자판기), 장비, 설비(급수설비, 배수 및 쓰레기처리, 세척, 직원용 위생설비 및 화장실, 온도관리, 대기환경 및 환기, 조명, 저장)</p>
공정관리	<p>▷식품 위험요소의 관리(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p> <p>▷위생관리체계의 주요측면 : 시간 및 온도관리, 특별가공단계관리, 미생물 및 기타 규격관리, 미생물교차오염관리, 물리적 화학적 오염관리, 입고재료의 관리, 포장물(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 및 성분으로 사용되는 물, 얼음 및 증기에 사용되는 물을 응용수만사용), 관리 및 감독, 자료구비 및 기록, 회수</p>
시설 : 유지 및 소독	<p>▷유지 및 세척(세척절차 및 방법, 세척프로그램)을 통한 청결상태 보장</p> <p>▷해충관리(침입방지, 은신처 및 침입, 모니터링 및 점검, 해충구제)</p>
개인위생	<p>▷식품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건강상태, 질환 및 상해, 개인청결, 개인행동, 방문객관리를 통한 식품의 오염 방지</p>
운반	<p>▷적절한 위생관리방안이 식품유통체계의 초기단계부터 적용되었음에도 운반과정 중 식품이 오염되거나 섭취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운반하는 동안 식품의 적절한 보호</p>
제품정보 및 소비자 인식	<p>▷제품에 적절한 정보 유지 및 소비자의 식품위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p> <p>▷불충분한 식품정보 또는 부적절한 일반식품위생에 대한 지식은 식품유통체계 중에서 제품을 잘못 취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잘못된 식품취급으로 식인성 질환이 초래되거나 제품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게 될 수 있음</p> <p>▷로트번호 확인, 제품정보 표시, 소비자교육</p>
훈련	<p>▷훈련은 식품위생체계에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식품과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위생훈련이나 지도 및 감독은 식품의 안전성과 적절한 식품섭취에 잠재적 위험을 준다. 따라서 훈련프로그램, 지도 및 감독, 재훈련을 통한 식품취급자의 식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 유지</p>

자료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연구위원, CODEX 식품위생 기본서: 2차 개정, 1999, PP. 9-39 참조

또한 소비자는 관련지시를 따르거나 적절한 식품안전방안을 적용하여 그들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 1999: 9-10).

국제권장 실행규범의 식품안전 일반원칙을 일차생산, 시설: 설계 및 설비, 공정관리, 시설: 유지 및 소독, 개인위생, 운반, 제품정보 및 소비자 인식, 훈련단계로 <표 III-1>과 같이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²⁾

식품위생의 범위는 농·축·수산물의 생산·수확, 저장,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 섭취 등의 단계를 포함하는 식품유통 체계를 말한다.

식품안전의 주체는 생산자, 가공자, 조리자, 판매자, 소비자, 관리자 등이다. 식품위생은 식품위생 주체에 의하여 식품을 안전하고, 완전하며, 건전하도록 식품의 전 단계에 동원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식품안전의 범위를 밭, 바다, 산에서 재배, 채취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로 제한하고자 한다. 즉 일차생산 산물인 농·수·축산물보다 가공식품의 식품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안전행정은 국가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12) 식품위생의 일반원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세척(cleaning) : 흙, 식품찌꺼기, 먼지, 기름기 또는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② 오염물질(contaminant) :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부착되어 식품의 안전성 또는 적합성을 해칠 수 있는 미생물 또는 화학물질, 이물질, 또는 기타 물질들, ③ 오염(contamination) : 식품내부 또는 식품주변으로 오염물질이 들어오거나 발생하는 것, ④ 살균(disinfection) : 화학적 제제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환경 중의 미생물수를 식품의 안전성 또는 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것, ⑤ 시설(establishment) : 식품을 취급하는 건물 또는 지역, 그리고 같은 관리조건 하에서 통제되는 환경, ⑥ 식품위생(food hygiene) : 식품유통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과 수행방안, ⑦ 위험요소(hazard) : 잠재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중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인자, 또는 그러한 식품의 조건, ⑧ HACCP : 식품의 안전상 중요한 위험요소를 확인, 평가, 관리하는 제도, ⑨ 식품취급자(food handler) : 포장 또는 비 포장된 식품, 식품제조장비 및 용기, 또는 식품접촉표면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을 말하며 따라서 식품위생준수사항을 따라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⑩ 식품안전성(food safety) : 식품이 그 사용의도에 따라 제조 또는 섭취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 ⑪ 식품의 적합성(food suitability) : 식품이 그 사용의도에 따라 섭취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 ⑫ 일차생산(primary production) : 식품유통체계 중 예를 들면 수확, 도살, 착유, 어획까지의 단계들을 의미함. 식품의약품안전청(1999).

제반 법령에 따라 행정조직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노력과 관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위생행정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제도로는 영업허가, 품목보고, 자가품질검사, 제품검사,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식품위생감사, 회수, 행정처분 등이 있다.

식품안전행정은 시대적 상황, 문화적 배경, 국민생활 수준, 국민의 의식 및 요구정도, 식품산업 및 식품위생기술 수준과 같은 주변 환경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 환경오염의 증대, 새로운 병원성 세균의 출현, 수입식품의 개방,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식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등장 등으로 국민 불만의 고조와 주변 환경의 급변에 따라 식품위생법령, 식품 등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의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큰 폭으로 개정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족으로 식품위생행정은 변혁기를 맞이하였다.

2. 식품안전규제의 개념 및 범위

식품과 관련한 건강위해는 식품이라는 재화의 구매와 소비행위의 결과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 기초한 위해의 일종이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이 식품과 관련한 건강위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위해수준에 대한 경제적 효율을 시장에서의 식품의 거래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식품구매 행위시 이루어지는 식품안전과 그 가격과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건강위해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시장에서 현시된 가격인상과 위해감소에 대한

균형조건은 각 소비자들로 하여금 각자에게 맞는 수용할 만한 위해수준을 결정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안전식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시장수요접근법(market demand approach)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다음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식품위해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시장을 통하여 공급받기가 매우 어렵다. 둘째, 식품위해 관련정보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며 비대칭성(asymmetry)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구매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넷째, 식품관련 건강위해는 식품제조업자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시장거래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환경적 외부효과(environmental externality)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식품안전이라는 잠재적 외부효과에 직면하여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나름대로 자기보호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은 위험회피 의사결정과정에서 회피행위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 건강위험의 일부가 내부화될 수도 있다.

결국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에만 맡겨 두게 되면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는 식품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완전한 식품안전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는 식품안전규제는 사회규제 중에서도 위험 제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식품안전규제를 포함한 환경위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유형은 특정한 식품위험에 따른 피해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천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식품안전을 위한 사전규제(ex ante regulation for harm)와 건강위해효과가 발생한 후 피해규제 차원의 피해발생에 대한 사후규제(ex post regulation for harm)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규제방식도 사전에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여 위해유발자의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과 안전기준이나 허용기준치 등을 정하여 위해유발행위가 직접적으로 통제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식품안전에 대한 위반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에는 위해효과의 발생확률을 줄이는 예방적 처치와 위해행위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을 때 피해의 크기를 줄이는 대응적 처치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은 공공정책수단으로 여러 분야에서 채택되어 집행되고 있지만, 특히 식품관련 건강위험의 통제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달성해야 할 안전규제의 기준, 즉 목표하는 확률을 정하는 것이다. 이 안전규제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는 주로 안전규제의 기준 설정시 규제위반 행위가 끼치는 편익을 얼마만큼 고려하느냐와 관련하여 건강위험을 알려진 것으로 취급하느냐, 미지의 것으로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영-위해원칙(zero-risk principle)은 관련된 규제위반 행위가 가져오는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안전수준을 목표로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면 식품의 건강위해가 0이 되는 수준은 식품의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해가 0이 되는 수준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해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일련의 경제행위가 가져오는 편익과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위해의 균형을 맞추려는 위해-

편익(risk-benefit principle) 또는 비용-편익(cost-benefit principle) 접근법을 사용하여 위해 또는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찾는 작업을 통하여 허용 가능한 위해의 목표치를 정할 수 있다. 즉, 식품위해를 감소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과 식품위해를 감소시키는데 소용되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전체적인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식품위해 수준이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직접규제방식이 위해관리의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인 위해가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위해의 수준을 결정하는 작업이 적당한 비용으로 관찰 가능해야 한다. 둘째, 위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는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가 위해를 발생시키는 주체보다도 그 위해에 대해서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비용절감적인 위해감소수단을 선택하는 데 더 나은 입장에 있어야 한다. 넷째, 정부규제담당자의 규제행위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수용성이 규제순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특성들은 직접규제방식이 비용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직접규제방식이 선호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켜지기만 하면 간접적 경제유인을 사용한 것보다 그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위해감소를 위한 정부의 사전규제방식 이외에도 위해에 노출된 사후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책임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위해유발행위로부터 초래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한다. 첫째, 책임원리는 위해유발자로 하여금 위해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서 장래에 위해효과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거나 피해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위해효과에 의한 피해로 고통당하는 피해자들을 보상해주어 타인의 행위에

의한 부정적 효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위해유발자로 하여금 특정 위해발생의 가능성을 스스로 줄이도록 하여 시장 기구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도구로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세나 부담금, 환불 가능한 예치금 등을 들 수 있다. 명령과 통제식의 규제방식에 비해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게 되면 위해발생자로 하여금 위해를 감소시킬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신축성을 주어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위해관리수단으로서 경제적 유인의 사용에 대한 잠재력은 관련된 위해의 유형에 달려 있다. 경제적 유인이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될 위해의 특성은 예를 들어 동물성장 촉진 호르몬제 사용이 계속적이거나 예상 가능한 경우이다. 반면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예측불허인 경향이 있으며 위반에 대한 감시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초래하는 건강에 대해서는 세금부과와 같은 경제적 유인을 적용시키기가 어렵다.

경제학자들은 건강위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수단으로서 사전규제방식과 사후규제방식을 배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양자는 보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잠재적 위해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식품관련 건강위해는 유해물질 잔류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노출과 건강위해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학적 증거수준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노출과 위해효과와의 현시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하는 등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해에 대해 책임원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유인과 보상의 목적 들다에 비추어 매우 비효율적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후 책임원리를 사전규제수단과 혼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정기혜, 2001).

3. 식품안전규제의 행정체계

넓은 의미에서 식품안전규제는 공중위생, 식품위생, 동물위생, 식물검역, 환경보전 등 5개 분야의 제도, 정책, 수단의 틀에서 구성된다. 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역할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정책적 틀을 만들고, 세부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보건산업연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리고 국립식물검역소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구조는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EU 각국의 구조와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률을 관장하는 담당부처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은 농림부, 식품위생법은 보건복지부, 계량에 관한 법률은 산업자원부로 다원화되어 있다.

식품안전규제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는 법제도단계, 규정·규칙단계, 실무단계에서의 구조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다. 법제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과 배상을 정하는 것과 목표규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규칙에는 매우 다양한 수단들이 있다. 식품안전규제 수단으로는 규격기준, 안전성 심사, 검사, 표시, 인증 등이 있다. 실무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규칙수단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업무기준이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규제에 관한 내용은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또는 국제표준화기구기준(CODEX) 등의 도입에 따른 취급단계에 있어서의 위험요소 배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식품관련 사건들의 방지가 어려운 점으로 남아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과 규격, 표시, 가공 등에 대한 법적 관리는 복잡하여, 관련 법률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가공산업법, 식품위생법, 그리고 계량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표준규격품을 비롯해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농산물의 품질인증 등은 농산물품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 및 재배관리에 관한 내용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가공식품, 비규격상자 출하농산물, 기능성식품은 식품위생법, 중량표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농림부는 생산자중심의 농업생산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여 왔으나, 식품산업과를 설치하여 소비자위주의 농업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의 기능도 전환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의무와 유전자변형체(GMO) 표시업무를 강화하였고, 각종 검역기관의 기능도 강화되었다(심상인, 2002).

동물검역소에서는 전체 식품 가운데 육류만을 대상으로 검역 및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다. 축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치료제인 동물약품을 쓰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호르몬제가 투여되기도 하므로 미생물과 잔류물질은 육류 검역에서 중요시된다. 육류의 국제교역에서 미생물과 잔류물질이 문제된 예는 많다. 미국과 EU간의 호르몬제 분쟁을 들 수 있고, 일본에 수출하는 돼지고기에서 동물치료제인 설파제가 검출되어 반송이 많았으며, 호주에서 사료에 사용한 농약인 크로르후르아즈론이 쇠고기에서 검출된 예가 있다. 동물검역소는 수입되는 모든 육류를 대상으로 잔류물질과 미생물을 검사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직접 접근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되지 못하여 검역업무는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고기나 우유 등 축산식품은 수분과 영양이 풍부하여 그 자체가 세균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배지이기도 하므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전문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축산물은 물론 일반식품까지도 모두 1차 생산부서에서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식품은 보

건후생성의 식품의약청(FDA)에서, 그리고 축산식품은 농무성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 안전위생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무성의 식품안전검사국에서 육류의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이유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잔류물질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발생원인 농가를 찾아내어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인수공통전염병은 사육단계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역추적하여 문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은 기획관리관, 안전평가관, 식품안전국, 의약품안전국의 2관 2국과 안전평가관 소속의 1실 6부, 부속기관인 국립독성연구소, 그리고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식품관련부서는 식품안전국과 식품평가부, 식품첨가물평가부이고,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국은 주요 업무를 3개 과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식품안전규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식품안전관련 제도개선, 식품 등의 표시기준 관련사항,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등의 업무는 식품안전과에서, 영업지도 단속 등 위생감시업무, 육가공 및 유가공 식품의 위생관리, 불량식품 단속에 관한 업무 등은 식품관리과에서, 그리고 식중독 조사처리, 수출입식품 관련 사항, 국제식품규격의 운영, 수입검사전산망 운용 등은 식품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품평가부는 식품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5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규격과는 식품공전 등 식품규격조사연구 및 방사선조사식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고, 식품미생물과는 식중독균 등 식품미생물관련 기준규격 검토 및 연구, 식품 중 항생물질 등의 검정,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 중 잔류농약, 호르몬제,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기준

및 검정, 실태의 파악 등을 주도하는 잔류농약과, 식품 중 유해중금속의 잔류실태조사 및 검정연구를 담당하는 식품오염물질과가 있으며, 식품의 영양성분기준 및 건강보조식품 등의 기준 규격, 식품의 성분표시 기준 등을 담당하는 영양과가 있다.

식품첨가물평가부서에서는 식품첨가물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시험법 개발,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과, 천연첨가물과, 용기포장과로 나누어 각각 합성첨가물, 천연첨가물, 식품용기구 및 용기포장 등에 대한 기준 및 안전성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독성연구소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독성, 병리학적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6개 지방청은 유통제품 및 수입식품의 수거검사, 지도단속 및 식품첨가물·방사선조사식품 등의 제조허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구하는 기본 정책방향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체계 정착, 식품관련 각종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추진, 신속하고 정확한 수입식품검사제도의 운용,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민관협동감시체계 강화로 볼 수 있다.

제 2 절 학교급식 식품안전규제

1. 위해성 예방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국가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된 이래 최근 10여년 사이에 초·중·고등학교로 급속히 확대되어 전체의 96.4%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는 등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지대한 관심 속에 발전을 거

듬해왔다. 또한 식생활이 간편화, 고급화, 차별화 되어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제는 학교급식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질적인 변화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급식학교수 증가와 비례하여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식생활을 위생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학교급식관리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식중독 발생은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집계한 1998-2002년도 3월까지의 집단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표 III-2>에서처럼 총 570건의 식중독 발생건수에 따른 환자수 31,314명 중 53.0%에 해당하는 16,600명(124건)이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 1999-2003). 학교급식소에서의 식중독 환자수 발생 비율은 1998년도에 30%에서 1999년에 44.3%, 2000년도에 65.9%, 2001년에 70.0%, 2002년에 27.0%, 2003년에 72.7%를 기록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현황을 원인균별로 최근 5년을 분석해 보면 살모넬라균에 의한 원인이 전체 환자의 19.1%, 포도상구균에 의한 원인이 14.3%로 2위로 집계되고 있다. 2001년부터 Noroviruses 군에 속하는 SRSV(small round structured virus)가 분리되어 2001년에는 14.7%, 2002년에는 17.0%로 살모넬라균이나 포도상 구균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급식학생수 10만 명당 환자발생비율(이환율)이 직영학교의 경우 25.0, 위탁영학교의 경우 215.1로 집계되어 위탁교에 의한 이환율이 평균 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곽동경, 2003: 20).

<표 III-2> 연도별 섭취장소별 식중독발생 현황

계 시설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3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94	4,577	174	7,764	104	7,269	93	6,406	78	2,980	27	2,318
가정집	23	436 (9.5)	26	396 (5.1)	12	206 (2.8)	5	90 (1.4)	7	117 (3.9)		
음식점	30	891 (19.5)	71	2,056 (26.5)	25	803 (11.0)	34	1,075 (16.8)	29	586 (19.7)	3	40 (1.8)
호텔	1	-	3	114	2	78 (1.1)	2	111 (1.7)	-	-		
집단 급식소	32	2,069 (45.2)	53	4,600 (59.2)	43	5,670 (78.0)	41	4,792 (74.8)	16	1,392 (46.7)	21	2,266 (97.7)
-회사	11	360 (7.9)	9	377 (4.9)	3	56 (0.8)	5	209 (3.3)	7	586 (19.7)	6	580 (25.0)
-학교	8	1,385 (30.3)	27	3,444 (44.3)	30	4,792 (65.9)	35	4,487 (70.0)	9	806 (27.0)	15	1,686 (72.7)
-기타	13	324 (7.1)	17	779 (10.0)	10	822 (11.3)	1	96 (1.5)	-	-		
기타	8	1,181 (25.8)	19	554 (7.0)	22	512 (7.1)	9	290 (4.53)	26	885 (29.7)	1	12 (0.5)
불명	-	-	2	54 (0.7)	-	-	2	48 (0.75)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2003. 3)

1977년 식중독 사건 이후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시행된 단독조리의 경우는 그 이후 20여 년간 큰 사고 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학교급식 실태조사 등을 통한 여러 보고에서 즉, 급식시설·설비 측면이 가장 많으며, 음식의 맛과 위생안전성 유지의 기본 요소인 적온 급식을 위한 시설·설비기준이 없어 음식의 적정온도가 유지되기 힘들고(강명희, 1995), 식중독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설비인 소독시설과 냉동고가 기본 급식설비·기구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으며(김경주, 1995), 급식실의 시설이 기본설계부터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채 2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

학교급식 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비롯한 급식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며(강명희, 1995), 급식품 미생물 관리 기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온도 기준, 조리장내 온도·습도기준 등 세부적인 기

준설정이 시급하고, 전반적인 급식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HACCP 시스템은 제품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체계로서 국제적으로는 1993년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System에 의해 HACCP 개념이 식품안전 보증평가를 위한 종래의 방법을 대신하도록 하였다(홍종혜, 1994). 1995년부터 EU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 식품에 대해 HACCP 시스템 적용이 법제화 되면서 대규모의 식품 산업체 뿐만이 아니라 소규모의 식품업체에까지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급식업계는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HACCP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0년 10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32조 2항에 의거하여 단체급식 분야에 HACCP가 적용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999년부터 특별정책과제를 통해 학교급식을 위한 일반 HACCP 계획을 개발하였으며(곽동경, 1999), 2000년도에 16개 시·도별 324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2001년도에는 직영급식학교에 확대해 시행하고, 2002년도부터는 운영위탁학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HACCP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2000년도에 관계전문가 및 시·도 교육청 실무자 참여에 의해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교육부, 2000)을 펴냈으며, 2002년도에 제1차 개정판을 냈다. 한편, 시·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를 연 2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2001년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평가 척도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교 현장의 위생관리가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위생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항목 및 평가척도를 개선하여, 시·도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200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2. 학교급식 식품안전규제의 내용

학교급식이라 함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편식 교정 및 합리적인 식생활의 지식과 습성을 함양하여 협동, 질서, 책임 등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며 계획적인 지도나 학습을 수반하여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과 체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올바른 식사법과 식습관을 가지도록 하고 아동들의 성장 및 정신발달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여러 형태의 급식을 말한다(현기순, 1987: 321). 학교급식 식품안전규제는 교육인적자원부내 특수교육보건과 내에 학교급식 전담 사무관과 담당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각급 시·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전담조직은 평생체육교육과 또는 체육보건교육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학교급식의 정의는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급식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초등학교급식이나 특수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직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급식을 말한다. 위탁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현재 초등학교는 정부직영형태인 학교급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위탁급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¹³⁾ 본 연구에서

13) 2002년 12월 31일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10,363교중 96.4%인 9,989교에서 급식을 실시하

의 학교급식 범위는 직영형태 및 위탁형태를 포함한 급식을 아우른다.

학교급식법 제5조(급식시설·설비)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2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제5조). 이를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급식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고, 이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6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는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그 시설·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가 가능하다.

특히 학교급식법 제6조 제2항 후단은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식품안전규제에 관한 내용을 실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조의 2는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령인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의 2는 위생 및 안전점검을 <표 III-3>과 같이 규정, 위생 및 안전점검사항·점검방법 및 기타 필요한

고 있다. 운영형태별로는 학교급식이 8,115교로서 81.2%, 위탁급식이 1,874교로서 18.8%를 차지하고 있다. 광동경(2003: 7) 참조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생과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항이 전부이므로 실제 학교급식현장에서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표 III-3> 위생 및 안전점검

위생 및 안전점검자	위생 및 안전점검의 시기
1. 학교의 장	매 급식시 마다
2. 교육장	가. 법 제5조 제2항(급식시설·설비)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식 시설의 경우: 매 급식시 마다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우: 연 2회 이상
3. 교육감	가. 법 제5조 제2항(급식시설·설비)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식 시설의 경우: 매 급식시 마다 나.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 연 2회 이상

자료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의 2 제1항 별표 5

제 4 장 연구모형의 정립 및 가설의 설정

제 1 절 연구모형의 정립

본 연구에서는 식품위생규제의 통제과정이 규제통제의 반응 즉, 순응과 불응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IV-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가설을 도출하였다. <그림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모형은 규제기관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태도 즉, 역할수용이 규제기관의 규제통제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규제기관의 규제통제방법은 규제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식품위생규제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동의수준이 규제통제방법과 순응 및 불응 행태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정립의 구체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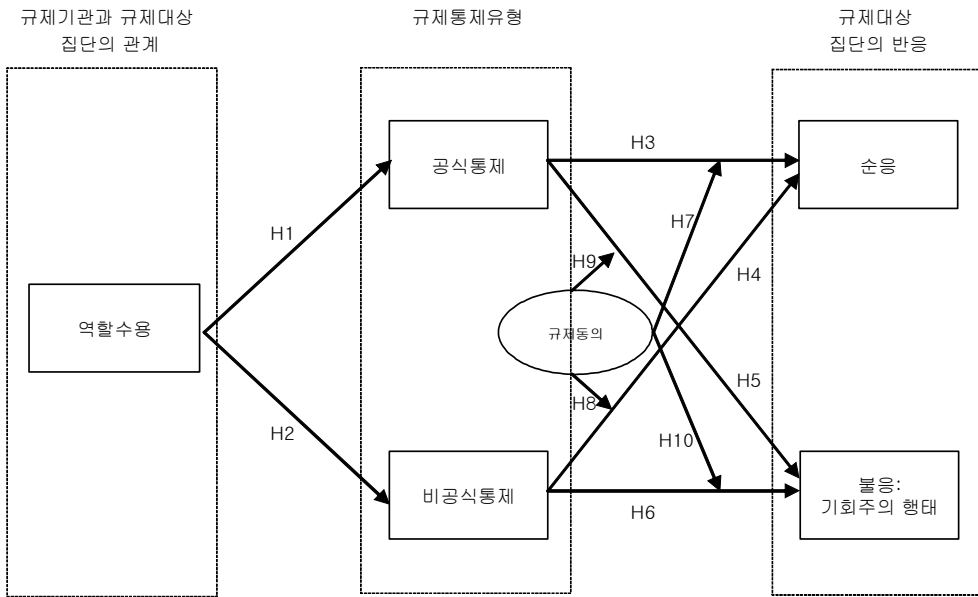
첫째,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 간의 관계에 따라 규제기관의 규제통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집단이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역할수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할수용의 정도에 따라 규제기관은 어떠한 규제유형을 활용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규제기관의 규제유형에 따라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의 규제유형을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공식통제라 함은 규제기관이 법규에 따라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공식통제라 함은 규제기관이 규제대상집단에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언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규제 대상집단의 반응으로는 순응과 불응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여기서 순응이란 규제대상집단이 정책 또는 법규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불응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대상집단의 불응을 기회주의 행태로 살펴볼 것이다. 기회주의 행태란 규제통제과정에서 통제자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통제의 유형이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인 순응과 불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규제기관의 규제유형이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제기관의 식품위생규제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동의라는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규제통제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성 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공식통제가 규제통제의 성과를 제고시킨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결과도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구체화하는 조절변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1> 연구모형



제 2 절 가설의 설정

1. 역할수용과 규제통제

규제기관의 바람직한 통제형태는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수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 임무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역할수용을 규제대상집단이 규제기관의 활동과 행위를 인식하여 지원하는 정도로 정의한다(Blake, 1976; Ellickson, 1991). 즉, 역할수용은 규제대상집단이 산업감시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규제기관의 감시활동을 인정하고 규제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바람직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역할수용은 규제기관

과 규제대상집단 간에 공유가치가 있다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규제대상집단의 역할수용이 증가하면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 사이의 사회적 교류가 확장되고 성숙하게 된다. 즉, 사회교육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양상이 나타나, 규칙, 보상, 처벌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는 것이다 (Mohr와 Nevin, 1990). 역할수용은 비공식통제과정을 통해 규제대상집단을 관리하려는 규제기관의 노력을 정당화시키게 된다.

공식통제는 통제자가 질서유지를 위해 법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Black, 1976). 법규는 사회구조가 비공식 규범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할 때 필요하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이 풍부하지 못할 때에는 관료주의적 규칙들이 생기게 된다. 사회통합이 붕괴될 경우에는 법을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결속과 공식통제 사이의 관계는 이웃 사이의 토론, 규제대상집단조직에서 윤리정책의 형성과 같은 데에서도 존재한다(Ellickson, 1991; Laufer와 Robertson, 1997). 안전규제에 있어서 규제대상집단의 역할수용이 결여된 것은 그 규제대상집단에게 규제기관의 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집단 간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비공식통제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규제기관은 규제대상집단의 통제관리를 위해 구체적이고 조문화된 규칙에 의존하게 된다.

H1 역할수용이 증가할수록 공식통제는 감소할 것이다.

H2 역할수용이 증가할수록 비공식통제도 증가할 것이다.

2. 규제통제와 규제대상집단의 반응

가. 규제대상집단의 순응

순응은 식품안전규제와 규제기관의 규칙집행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준수여지라 할 수 있다. 규제대상집단이 순응하고 있다면 그 규제대상집단은 규제기관의 안전지침을 조사하여 어떤 변화가 요구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Kumar 외, 1992; Quinn과 Rohrbaugh 1983). 가끔 규제대상집단이 순응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대상집단의 악의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자금부족과 같은 순응 능력의 부족 또는 교육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요구조치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

공식통제는 규제기관과 규제대상 산업 사이에 사회적 성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방향 정보교환과 협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에 공식적 통제는 규제기관의 권위를 바탕으로 정보의 일방적 제공을 통하여 순응을 촉진시킨다(Bello와 Gilliland 1997). 규제관료는 검사과정 중에 통제규칙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게 된다. 그리하여 오해의 소지를 거의 제거시키게 된다. 안전기준 그 자체는 순응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에 비공식통제는 풍부한 정보의 제공이나 공유를 통하여 순응을 촉진시킨다. 구체적인 조언, 힌트, 그리고 제안 등은 규칙에 대한 오해를 분명히 해주고 자기규제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교육은 규제대상집단의 능력을 제고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검사과정 중에 규제관료가 특별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고 질문을 하게 되며 적절한 예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Challagalla와

Shervani 1996). 요컨대, 비공식통제 메커니즘은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집단이 상호 의사전달 및 관계의 형성을 위한 공동 근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가 모두 순응을 촉진시키지만, 비공식통제는 규제대상 산업에게 기대되는 행태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의 집행현장에서 더 효율적이다(Gundlach 1994). 규제기관이 비공식적으로 통제할 경우에는 규제기관은 구체적인 통제규칙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관리할 수 있다. 규칙은 공식적 통제 보다는 비공식통제의 경우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규칙을 더 잘 알려주고 가르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H3 공식통제는 순응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H4 비공식통제는 순응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나. 규제대상집단의 불응 : 기회주의 행태

기회주의는 통제자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통제자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을 말한다(John, 1984). 규제상황에서 기회주의는 규칙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안전기준의 위반을 숨기거나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회주의는 기회주의 행태가 의도적으로 법적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순응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기회주의는 자주 발생하지 않더라도 규칙의 준수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

는 경우가 있다. 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점검 및 조연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또한 규제대상집단들은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편의시설의 재설계, 과정의 리엔지니어링, 성분의 재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들게 된다.

법적 권위가 통제자의 강제력 사용을 정당화시켜 준다고 하더라도(Ouchi, 1979), 공식통제는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관리자들은 가끔 공식통제를 하향적 강제력 행사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Black, 1976). 규제의 강제력을 엄격하게 사용하게 되면 규제대상집단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윤리적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규제대상집단은 자기 방식대로 행동함으로써 자치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되며(Greenberger와 Strasse, 1986), 부당하다고 느끼는 조치에 대해 보복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Morrison과 Robinson, 1997). 공식통제는 기회주의 행태를 촉진시키게 된다.

반면에 비공식통제는 기회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메커니즘은 상호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활용될 수 있다(Achrol과 Gundlach, 1999). 사회교육과 기타 지원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규칙의 비공식적 집행이 증가하게 되면 규제대상집단은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집행되면서 기회주의 행태에 대한 필요성은 감소되게 된다.

H5 공식통제가 증가할수록 기회주의 행태도 증가할 것이다.

H6 비공식통제가 증가할수록 기회주의 행태는 감소할 것이다.

3. 규제동의를의 조절효과

가. 규제통제와 순응

규제통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검토되어 왔으나 그 결과는 일관성이 없었다. 예를 들어, 관료적 통제가 편의주의를 증가시키는가 하면 반대로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으며(Dahlstrom과 Nigaard 1999; John 1984), 공식적 통제는 성과결과를 제고시킬 수도 있고 제고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llo와 Gilliland 1997). 이러한 비일관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구체화하는 조절변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Baron과 Kenny 1986). 본 연구에서는 규제규칙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동의 정도를 검토함으로써 통제와 반응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규제대상집단은 규제가 그 산업의 고객들을 보호하고 진입장벽을 높이며 규제대상집단을 법적 조치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불공정한 경쟁자에 의한 손해를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규제의 영향을 환영하게 된다(Priest 1982). 그러나 규제대상집단은 규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경우 규칙들은 제한적이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이는 수용가능 행태와 수용 불가능한 행태 사이의 한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식품규제에 있어서 어떤 식품은 영하의 온도에서 처리되어야 하나 그 보다 1도 높은 가령 1도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규제동의를 안전관련 활동에 관한 규제대상집단의 태도가 실질적 통제규칙에서 규정된 활동들에 부합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규제에 동의하는 규제대상집단은 규칙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 규칙들이 적절하다고 믿는다(Aday와

Thomson 1992).

앞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규칙의 공식적 비공식적 집행은 순응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day와 Thomson(1992)은 규제통제와 순응 사이의 관계의 강도는 규제대상집단의 동의 정도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그들은 통제메카니즘의 효과성은 규제대상집단의 동의정도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규제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동의가 높을 경우, 규제기관에 의한 공식적 비공식적 집행은 규제대상집단으로 하여금 규칙에 대한 규제기관의 입장을 상기시키고 강화시키게 된다. 규제대상집단이 규칙에 동의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집단은 규칙의 필요성, 공중안전에 대한 규칙의 함축적 의미, 규제대상집단의 책임을 인식하게 된다. 규제대상집단은 학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요구에 부분적으로 순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규제대상집단은 그들의 순응실패가 식품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통제가 증가함에 따라 순응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규제대상집단이 규제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규칙위반과 식품안전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순응실패가 학생안전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대상집단이 자신들의 고객인 학생들에게 가질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규제에 대한 동의가 낮을 경우에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기대가 적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규제대상집단은 동의의 정도가 높을 경우보다는 순응이 유발되지 않을 것이다.

H7 규제에 대한 동의가 낮을 때 보다는 높을 때에는 공식통제와 순응 사이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H8 규제에 대한 동의가 낮을 때 보다는 높을 때에는 비공식통제와 순응 사이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나. 규제통제와 불응: 기회주의 행태

규제대상집단이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되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 규제대상집단이 규칙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규칙은 갈등요인이 되고 공식통제를 증가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좌절과 기회주의 행태의 순환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규제대상집단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규칙에 응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규제대상집단의 동의가 낮은 경우 규칙의 공식통제가 증가하게 되면, 기회주의행태로 불응이 증가될 것이다.

이에 반해 규칙에 대한 동의가 높을 경우, 규칙은 규제대상집단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Dahlstrom과 Nigaard, 1999).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칙이 거래의 지침이 되므로 기회주의적 행태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규칙에 대한 동의가 높을 경우, 규제기관에 의한 공식통제의 증가는 규제대상집단의 숙임 행위 정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한편 규제대상집단이 규칙을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기회주의 행태가 나타날 이유는 거의 없다. 이 경우 규칙들은 비공식통제 즉,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규칙에 대한 동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비공식통제와 기회주의 사이의 부(-)의 관계가 약화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규칙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의 동의수준에 따

라 통제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Jaworsky, 1988). 규제대상집단이 규칙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규제기관과 충돌하게 되므로 사회적 관계는 위협받게 된다. 본질적으로 규제기관은 규제대상집단이 규칙 적용의 근거를 문제시할 경우 비공식통제를 적용하게 된다.

H9 규제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을 경우 공식통제와 기회주의 사이의 관계는 규제에 대한 동의수준이 낮을 경우에 비해 더 약할 것이다.

H10 규제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을 경우 비공식통제와 기회주의 사이의 관계는 규제에 대한 동의수준이 낮을 경우에 비해 더 강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1. 변수의 조작화

<표 III-4>에서처럼 역할수용은 Ellickson(1991)의 연구에 토대를 두고 교육청 등 식품규제기관에 대한 급식소의 지지와 규제기관의 규제업무에 대한 평가로 측정하였다. 기회주의는 규칙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안전기준의 위반을 숨기거나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말하는 것으로, John(1984)의 개념을 바탕으로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공식통제는 학교 급식소가 법조문 그대로의 점검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관해 측정하였으며, 측정항목들은 규제통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Bello와 Gilland, 1997; Jaworsky와 MacInnis, 1989). 비공식통제는 교육청 등 식

품위생규제기관이 급식안전기준을 집행할 때 사용된 사회교육의 정도로 측정된다. 측정항목들은 Jaworski와 MacInnis(1989)가 개발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급식소검사기간 중 점검자가 조언, 설명, 도움이 될만한 교육, 제안 등을 해 줌으로써 식품안전규칙을 점검하며 집행하고 있음을 규제대상집단이 인지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에 대한 동의는 식품안전에 관한 급식소의 태도가 식품안전코드의 구체적인 사항들과 일치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측정항목들은 동의에 대한 Aday와 Thomson(1992)의 동의개념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측정항목은 식품안전규제의 통제유형이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미친 영향에 관한 지각의 정도를 7점 리커트 반응 척도로 기록하여 등간 척도에 표기하도록 설계하였다.¹⁴⁾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은 각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Excel의 spreadsheet에 코딩하여 입력한 후, 데이터 베이스의 10%에 해당하는 설문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체크하였다. SPSS 12.0을 활용하여 초기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량 산출, T-검증과 분산분석을 통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본 연구의 변수 평균간의 분산의 동질성 검증, F-검증, 대비검증, 그리고 다중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최종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합산평균값을 구하고,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형구조분석을 통하여 선행요인과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규제집단의 동의, 순응, 불응간의 인과성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4.0을 사용하였다.

14) 리커트 7점 척도는 5점 척도보다 섬세한 반응을 유도하여 측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척도 점의 수가 많을수록 측정의 분산도가 커지며 이에 따라 분석결과가 더 명확해지지 때문에 사용하였다.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서울: 학현사, 1997), p. 230.

<표 III-4> 측정항목

구성 변수	측 정 항 목
역할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규제기관의 노력을 지지한다. - 우리는 규제기관과 돈독한 관계의 구축을 바라지 않는다. - 우리는 규제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공식통제	<p>식품안전 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검사원들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집에 규정된 그대로 규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 그들은 규정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엄격하다. - 그들은 위반사항을 언급할 때 법문에 너무 집착한다.
비공식통제	<p>우리 급식소 검사기간에 규제기관 검사원들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소관리인들에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조언을 해준다. - 그들은 적용 규칙과 규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 그들은 더 안전한 식품 준비와 저장에 관해 제안하고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규제동의	<p>식품안전규제에 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우리는 규제가 우리 산업에 유익하다고 믿는다. - 우리는 규정집에 있는 그대로 규제에 동의한다. - 우리는 규제가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다.
순응	<p>식품안전규제에 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 식품안전에 관해 더 주의하게 된다. - 지적한 사항에 따라 요건을 개선시킨다.
불응: 기회주의 행태	<p>나는 솔직히 검사과정을 거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자의 코멘트와 제안을 간과해 버린다. - 검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에 관해 더 주의하지 않게 된다. - 검사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상황을 약간 다르게 대변하게 된다.

2. 측정

본 연구는 식품안전규제의 통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공공안전의 맥락에서 규제통제를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K광역시 및 C도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 급식소의 관리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학교 급식소에 대한 할당표본 추출을 하였다. 설문대상자들은 주로 학교직영 급식소관리자들과 종사자들이었다. 질문의 민감한 성격 때문에 모든 응답자들에 대해 완전히 익명으로 하였다. 총 400부를 예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설문지를 방문 배포하여 일정기간 후에 19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1개의 응답지를 최종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5 장 실증분석

제 1 절 표본의 추출 및 특성

1. 표본의 추출

본 연구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식품위생규제의 통제과정의 유형에 따라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규에 따른 통제여부에 따른 반응에 대한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규제의 법치론 정립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성개념의 내용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책대상집단의 반응행위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항목 30개를 개발한 뒤 3단계를 거쳐 수정하였다. 첫째, 개발한 측정항목을 우선 C대학교의 교수 및 대학원생,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을 약5회 대면면접(face-to-face interview) 하는 방식으로 설문내용, 설문의 배치순서, 용어표현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둘째, 수정한 설문항목을 설문 대상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소관리자들과 종사자들 6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한 표본 47개를 대상으로 본 조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¹⁵⁾

셋째, 예비조사 결과를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구성개념과 높은 일관성을 나타낸 24개 항목을 측정도구로 최종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 및 분석 대상은 초중등학교 직영 및 위탁급식소에서 급식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자들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¹⁶⁾ 모집단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비용과 시간적 제약요인 때문에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을 한 후 모집단에 대하여 추론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본 대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급식소관리자들과 종사자들로 정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 급식소 관리자들과 종사원들은 각각 자치단체의 소속은 다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 및 행정 환경이 상호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표본으로 삼았다. 표본선정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 급식소관리자들과 종사자들의 비율에 따른 할당표본 추출방법(quota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¹⁷⁾

설문조사는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평생교육체육과에 의뢰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체육

15) 예비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설문문항의 의미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문항을 구성하여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자료수집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하여 설문대상집단과 유사한 소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데 있다. Converse와 Presser(1986: 56). 대개 25-75개의 표본을 가지고 실시하는 예비조사는 설문항목의 내용, 형식, 양식, 표현, 배치순서 등을 점검하여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 조사의 경우 정확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 *ibid.*, pp. 54-65. 또한 예비조사의 가치는 설문항목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는데 있으며, 전문적 판단이나 지적 활동의 어떠한 것도 예비조사를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McDaniel과 Gates(1995: 301).

16) 초·중·고·특수학교 10,363교중 96.4%인 9,989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운영형태별로 보면 학교급식 8,115교(81.2%)와 위탁급식 1,874(18.8%)교가 있다. 학교급식교의 경우 자체조리 6,124교(75.5%) 및 공동조리 1,991교(24.5%)로 나눌 수 있고, 위탁급식교의 경우도 교내조리 1,531교(81.7%) 및 외부운반 343교(18.3%)가 있다. 광동경(2003: 7).

17) 할당표본추출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상당히 구별할 수 있는 부분집합들의 각각에서 일정한 개수의 원소들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전라남도교육청 급식담당 공무원들에게 학교별 부분집합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원소들을 적절히 선정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을지라도 실제 표본의 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할당표본은 확률표본보다는 덜 타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 된다. 그렇지만 할당표본추출은 실무적인 이유로 매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소영일(1994: 269-271).

보건교육과에 의뢰하여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최종 집계결과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103부가 회수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90부가 회수되어 전체 회수율은 48.3%이다. 항목 중 응답이 누락되어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12부를 제외한 후 총 181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IV-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행정기관	배부	회수	회수율	방법
전라남도교육청	250	103	41.2	할당표본/ 방 문
광주광역시교육청	150	90	60.0	
계	400	193	48.3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2>와 같다. 응답 학교급식소 관리자들과 종사원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성별에 있어서 유효응답자 181명 중 남자가 1명으로 0.6%, 여자가 180명으로 99.4%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유효응답자 181명 중 30세 미만이 5명으로 2.8%, 30세-35세가 42명으로 23.2%, 36세-40세가 37명으로 20.4%, 41세-45세가 43명으로 23.8%, 46세 이상이 54명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의 결과는 30세 이상이 응답분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의 결과는 고졸 이하가 38명으로 21.0%, 전문대졸이 44명으로

24.3%, 대졸이 95명으로 52.5%, 대학원졸업이 4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의 결과는 대학 졸업 이상이 응답분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급별의 분포를 보면, 유효응답자 181명 중 9급이 37명으로 20.4%, 8급이 36명으로 19.9%, 7급이 49명으로 27.1%, 6급이 7명으로 3.9%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으며, 무응답은 52명으로 28.7%를 차지하고 있다. 직급별 결과는 급식관리자 및 종사원의 다수가 6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책별의 분포를 보면, 유효응답자 181명 중 영양사가 102명으로 56.4%, 조리사가 79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다. 직책별 결과는 급식관리자 및 종사원이 영양사와 조리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재직기간별로 보면, 유효응답자 181명 중 3년 이하가 19명으로 10.5%, 4년-9년이 95명으로 52.5%, 10년-19년이 65명으로 35.9%, 20년 이상이 2명으로 1.1%를 차지하였다. 재직기간별 결과는 급식관리자 및 종사원의 대다수가 4년 이상을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분포되어 있어 자신의 조직업무 흐름에 익숙해 있다고 볼 수 있다.

18) 비확률적 할당표본 추출이었기 때문에 모집단과 비교하여 표본추출의 대표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7월 현재 조사대상 영양사 512명(52.4%)중에서 4%가 더 많이 추출되었고, 조리사 465명(47.6%)중에서 4%가 더 적게 추출되었다(자료: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급식 영양사 및 조리사 현황, 2005. 7).

<표 IV-2> 표본의 특성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성	1	0.6
	여 성	180	99.4
	무 응 답	0	0.0
	계	181	100.0
연 령	30세 미만	5	2.8
	30세-35세	42	23.2
	36세-40세	37	20.4
	41세-45세	43	23.8
	46세 이상	54	29.8
	무 응 답	0	0.0
	계	181	100.0
학 력	고졸이하	38	21.0
	전문대졸	44	24.3
	대 졸	95	52.5
	대학원졸	4	2.2
	무 응 답	0	0.0
	계	181	100.0
직 급	9급	37	20.4
	8급	36	19.9
	7급	49	27.1
	6급	7	3.9
	무 응 답	52	28.7
	계	181	100.0
직 책	영양사	102	56.4
	조리사	79	43.6
	계	181	100.0
재직기간	3년 이하	19	10.5
	4년 - 9년	95	52.5
	10년-19년	65	35.9
	20년 이상	2	1.1
	계	181	100.0

제 2 절 측정도구의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당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타당도 분석을 먼저 수행하였다.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하여 높였으며, 축소된 요인의 신뢰성을 신뢰도 분석으로 제고시켰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된 측정항목을 변수에 따라 합산 평균하여 선형구조분석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1. 타당도 분석

측정항목의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낸다. 측정항목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SPSS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데이터가 이미 설정한 연구모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 내에 묶여진 측정항목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각 요인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Fishbein과 Ajzen, 1975: 109-111).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음과 같은 4단계 과정에 따라 실시하였다.

첫째, 구성개념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요인분석은 관련된 항목들을 서로 묶어 주어야 하므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항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아이젠 값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셋째,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기의 행렬을 직교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이용하여 회전시켜 요인 적재값 행렬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요인추출

의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아이겐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아이겐 값은 요인이 설명해줄 수 있는 분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겐 값이 1이라는 것은 변수 하나 정도의 분산을 축약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본 연구의 요인분석 역시 아이겐값과 분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분석 실행과정에서 요인 적재값이 0.3 이하로서 타당성을 저해하는 6개 항목을 제외한 후 다시 분석하였다. 요인 적재값은 각 항목과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낸다. 각 항목들은 요인 적재값이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요인 적재값의 유의성 기준²⁰⁾은 보통 ± 0.3 이상이면 유의하지만 보수적으로는 ± 0.4 이상이다. 그리고 ± 0.5 이상인 경우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본다. <표 IV-3>처럼 요인 적재값이 0.4 이상인 18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18개 요인이 총분산의 71.8%를 설명하였다. 18개 항목들이 6개의 가설된 요인들로 명백하게 분리되었다. 이 결과는 6개의 개념들이 경험적으로 구별 가능한 구성요소들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다.

19) 일반적으로 아이겐 값을 1 이상인 요인들을 설정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각 요인이 변수 하나 정도의 분산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분산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사회과학에서 총분산의 60% 정도를 설명해 주는 요인까지 상정한다. 채서일, 전게서, p. 561.

20) 요인 적재값의 유의성 기준은 표본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의수준 $p < 0.05$ 에서 표본수가 50개일 때 적재치가 0.75 이상, 100개일 때 0.55 이상, 150개일 때 0.45 이상, 200개일 때 0.40 이상, 250개일 때 0.35 이상, 그리고 350개일 때 0.30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100개 이상은 되어야 하며 가장 낮은 적재값은 절대값 기준 ± 0.30 이상이 될 때 유의한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Hair, Jr. 외(1998: 111-112).

<표 IV-3>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값 행렬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역할수용	.801 .854 .826					
공식통제		.832 .782 .853				
비공식통제			.868 .442 .845			
규제동의				.680 .844 .635		
기회주의					.749 .841 .875	
순응						.801 .854 .826
아이겐값 분산비율 누적비율	2.530 14.057 14.057	2.333 12.960 27.017	2.262 12.568 39.585	1.963 10.903 50.903	1.949 10.830 61.318	1.887 10.485 71.803

2. 신뢰도 분석

신뢰도(degree of confidence)란 동일한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같거나 유사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이 나오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측정항목의 신뢰도는 측정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낸다(남궁 근, 1999: 326).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설문항목들을 사용하여 이들 문항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응답결과를 보일 경우 측정의 일관성이 높고 설문항목들이 동질적이라고 본다.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채서일, 1997: 250).

신뢰성(reliability)은 어떤 조사결과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말하는데, 측정오차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신뢰성 분석은 설문도구의 문항간에 얼마나 일관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으로, 신뢰성 분석을 위한 분석기법으로는 재검사법, 복수 양식법, 반분법 및 내적 일관성기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측정하는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선정한 18개 표본자료의 내적 일관성 즉,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적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Cronbach α 값을 계산하고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 검증결과는 <표 IV-4>와 같다.

Cronbach α 값은 상관계수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다. 알파계수의 기준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탐색적 연구에서는 0.5-0.6 정도의 신뢰도이면 충분하며, 기초연구에서는 0.7 이상의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²¹⁾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21) 탐색연구는 문헌조사, 경험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를 규명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기초연구는 순수한 학문 발전을 위한 연구로써 기본적으로 가설검정의 성격이 짙다. Nunnally(1978: 246).

있는 요인들의 α 값은 모두 0.7 이상이어서 모두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뢰도 분석결과 <표 IV-4>에서처럼 외생개념인 역할수용의 Cronbach α 값이 0.722로 가장 낮았으며, 매개 내생개념 중 공식통제의 정도를 측정항목의 알파 값이 0.830으로 높았고, 내생개념 중 순응의 정도를 측정항목에 대한 알파 값이 0.842로 가장 높았다.

<표 IV-4> 선별된 측정항목과 신뢰도

변수명		항목	평균	표준편차	α
외생변수	역할수용	3	4.429	1.269	.722
매개 내생변수	공식통제	3	5.208	1.132	.830
	비공식통제	3	4.451	1.022	.794
	규제동의	3	4.581	1.191	.737
내생변수	기회주의	3	3.228	1.189	.809
	순응	3	5.882	1.102	.842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각 측정항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18개 측정항목 중에서 SPSS를 이용한 요인분석결과 요인 적재값이 0.4 이상인 18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신뢰성 분석에서도 이를 확인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둘째, 이들 측정항목을 변수별로 평균값을 구하였다. 셋째, 각 변수의 평균값을 가지고 AMOS 4.0을 이용하여 선형구조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3 절 변수의 기술적 통계

1. 단일변수의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각 단일변수의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에 따른 결과를 <표 IV-5>에 제시하였는데, 이 자료분포의 특성으로부터 정규분포 여부를 살피고 평균을 중심으로 각 항목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자료분포의 형태는 여러 가지 도표나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²²⁾ 본 연구에서는 분포의 대칭성으로부터 자료의 정규분포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비대칭도(skewness; S_k)를 사용하려고 한다(Hair, Jr. 외, 1998: 38). 왜냐하면 평균과 최빈수를 비교해 보면 자료의 분포에 대한 좌우대칭여부를 알 수 있고 비대칭분포일 경우 기울어진 방향까지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를 알면 자료의 흩어진 정도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집단들 간의 비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기울어진 정도를 알 수 없으며, 특히 집단들 간의 비교는 더욱 곤란하다. 평균과 최빈수의 차이가 클수록 또는 표준편차가 클수록 반드시 기울어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대칭도를 가지고 측정하기로 한다.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비대칭도가 평균을 중심으로 양(+)
값을 가진 분포는 몇 개의 상대적으로 큰 값들이 있어서 꼬리를 오른쪽

22) 자료분포의 모양은 막대그래프, 히스토그램, 꺾은선그래프, 분포곡선, 파이차트 등의 눈으로 식별하기 쉬운 도표로 나타내거나 또는 수치로 분포형태를 알려주는 통계치가 있는데 이들은 중앙경향값을 알려주는 최빈수의 수, 자료분포의 밀집이나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첨도, 자료의 비대칭의 정도를 측정하는 비대칭도,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궁근(1998: 404-405)을 참고하기 바란다.

으로 늘어뜨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음(-)의 값을 가진 분포는 몇 개의 상대적으로 적은 값들이 있어서 꼬리를 왼쪽으로 늘어뜨린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Hair, Jr. 외, 1998: 71-72). 자료의 분포가 완전한 정규분포일 때 비대칭도는 0이 되지만 완전한 정규분포를 이루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본 연구와 같은 다변량분석에서는 정규분포로 간주하여 각종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분포로 간주되는 비대칭도의 정확한 값을 단정할 수 없고 대체로 0에 가까우면 정규분포로 다룰 수 있다(김호정, 1994: 98-99). 비대칭도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큰 변수는 대체로 정규분포로 보지 않으며 분석에서 제외한다.

위의 전제에 의하면 각 변수의 측정항목이 정규분포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8개 측정항목들이 0에 가깝거나 위의 전제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정규분포로 간주하여 가설검증이나 그 밖의 분석을 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에 대한 학교급식 관리자 및 종사원들의 반응정도에 대하여 평균값 4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할수용에 대한 인식의 경우 평균 정도의 반응을 보여, ① 규제기관의 노력지지 정도, ② 규제기관이 행한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 ③ 규제기관과의 돈독한 관계 구축 희망의 정도의 순으로 보통의 인식을 하고 있다.

공식통제의 경우 평균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식품안전 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검사원들이 ① 위반사항의 언급 시 범문에 집착하는 정도, ② 법령집에 규정된 그대로 규정을 적용하는 경향의 정도, ③ 규정해석에 있어서 엄격성의 정도 등의 순으로 평균이상의 인식을 하고 있다.

비공식통제에 대한 질문의 경우 급식소 검사기간에 규제기관 검사원들은, ① 더 안전한 식품 준비와 저장에 관해 제안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② 급식소관리인들에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조언을 하며, ③ 적용 규칙과 규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는 질문에 보통의 인식을 하고 있다.

규제에 대한 동의의 경우 평균 정도의 반응을 보여 식품안전규제에 관해 ① 규제가 공중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믿는지의 정도, ② 전반적으로 규제가 식품산업에 유익하다고 믿는 정도, ③ 규정집에 있는 그대로 규제에 동의하는지의 정도의 순으로 보통의 인식을 내보이고 있다.

기회주의의 경우 검사과정을 거친 결과 ① 검사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상황을 약간 다르게 대변하는 정도, ② 검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에 관해 더 주의하지 않는지의 정도, ③ 검사자의 코멘트와 제안에 대한 무시의 정도의 순으로 보통 이하의 인식을 하고 있다.

순응의 측면에서는 식품안전규제에 관해 ① 지적인 사항에 따라 요건을 개선하는 정도, ② 식품안전에 관해 더 주의하는 정도, ③ 검사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순으로 보통 이상의 인식을 하고 있다.

<표 IV-5>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변수	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비대칭도
역할수용	① 규제기관의 노력에 대한 지지의 정도	4.23	1.27	.249
	② 규제기관과의 관계구축 희망의 정도	3.90	1.11	.525
	③ 규제기관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인식의 정도	4.39	1.21	.242
	· 합산평균	4.17	1.20	.339
공식통제	① 식품안전 규제 법령 적용의 엄격성 인식	5.17	1.23	-.201
	② 식품안전 규제 법령 해석의 엄격성 인식	5.15	1.23	-.159
	③ 식품안전 규제 법령 위반사항 언급의 엄격성 인식	5.31	1.17	-.105
	· 합산평균	5.21	1.21	-.155
비공식통제	① 식품안전과 관련한 조언에 대한 인식	4.40	1.27	-.192
	② 적용 규칙과 규제의 설명 노력에 대한 인식	2.93	0.89	-.604
	③ 안전한 식품 준비와 저장관련 제안과 정보 제공	4.50	1.21	-.309
	· 합산평균	3.94	1.12	-.368
규제동의	① 식품안전규제가 산업에 유익하다고 믿는 인식정도	4.60	1.20	-.025
	② 규정 그대로 규제에 동의하는지의 인식정도	4.17	1.31	.105
	③ 규제가 공중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4.98	1.28	-.288
	· 합산평균	4.58	1.26	-.069
순응	① 식품안전규제에 관한 검사자의 제안 수용 정도	5.57	1.05	-.376
	② 식품안전규제에 관해 식품안전에 대한 주의 정도	5.95	0.99	-.761
	③ 지적인 사항에 따른 요건 개선의 정도	6.13	0.98	-.124
	· 합산평균	5.76	1.01	-.420
불응: 기회주의	① 검사후 검사자의 코멘트와 제안에 대한 무시 여부	2.88	1.54	.579
	② 부적절한 검사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주의 여부	3.37	1.69	.302
	③ 검사자의 기분에 맞춰 상황을 달리 대변하는 정도	3.42	1.66	.167
	· 합산평균	3.22	1.63	.349

2. 특성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Fishbein과 Ajzen(1975)의 모델에 따라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재직기간 등으로 대표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들을 분석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석모형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에 행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들을 외부변수로 취급하였다(Ajzen과 Fishbein, 1980: 8-9). 왜냐하면, 학교급식소의 위생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의 기여에 아주 의존적이며,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이 성공적인 학교급식소의 위생안전에서 점차 핵심요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품안전규제행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외부변수들의 잠재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분석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들과의 차이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들이 역할수용,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규제에 대한 동의, 기회주의, 순응 등의 변수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에는 t검증이나 Z검증이 있다.²³⁾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 Z검증을 이용하지만 두 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통 t검증을 사용한다. t검증은 두 표본집단간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많이 이용되고 F검증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차이의 검증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대조적이다. 또한 t검증은 t분포를 이용하는 반면에 F검증은 F분포를 이용하며 검증과정에서 분산을 비교 분석하므로 분산분석이라고도 한다. 분산분석은 독립변수의 차이가 종속변수의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으로써 독립변수가 하나인 일원분산분석과 두 개인 이원분산분석 그리고

23) 자세한 내용은 김호정(1994: 195-259)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러 개인 다원분산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t값 또는 F값이 충분히 큰 경우 그 차이는 표본변동 때문이 아니라 실제의 차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값이 클수록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두드러진다. F검증은 세 집단 이상의 집단내 분산에 대한 집단간의 분산의 비율인 F값이 임계치 이상으로 크거나 F값의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을 경우에 집단들 간에 평균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²⁴⁾ 유의수준이 0.05보다 적으면 5%의 유의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평균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평균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귀무가설이 채택될 상황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성별에 따른 두 집단간의 차이분석은 의미가 없어 검증을 하지 않았으며, 연령, 학력, 직급, 그리고, 재직 기간에 따른 세 집단 이상간의 차이분석은 F검증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집단의 등분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등분산 통계량과 유의확률을 살펴보았다. 둘째, 분산이 동질적일 경우 분산분석의 값인 F값과 유의확률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셋째, 분산이 동질적이지 않는 경우 대비검증으로 구한 t값과 유의확률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간 요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평균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분석(post hoc test)으로서 다중비교를 하였다.²⁵⁾ 사후분석은 주 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이후에 수행되는 종속

24)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이란 가설검증에서 용납될 수 있는 오류의 정도 혹은 가설검증이 오류를 범할 확률로써 구간추정에서 사용하는 신뢰수준과 같다. 임계치(critical value)란 유의수준 α 하에서 기각 가능 영역과 기각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점을 의미하며, 유의수준 0.05에서 절대값 기준 임계치가 1.96 이상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p값(p-value)이란 검증통계량을 Z값이나 t값으로 전환시킨 다음, 이 값을 근거로 귀무가설을 기각시켰을 때 범할 수 있는 오류의 정도 혹은 이 값의 절대치보다 더 큰 것이 나올 가능성을 말하며, 그 값이 유의수준 α 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고, α 이상이면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없다.

변수간의 평균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으로써 사전분석(priori test)과 반대의 개념인데 사전분석은 자료를 이론적 혹은 실무적 의사결정의 관점을 가지고 고찰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계획된 검증을 말한다(Hair, Jr. 외, 329).²⁶⁾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있는 유의한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연령별 차이분석

식품안전규제 대상 일선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연령에 따라 역할수용,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규제에 대한 동의, 기회주의, 순응 등의 변수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한 F검증 결과를 <표 IV-6>에 나타냈다.²⁷⁾ 이들 변수 중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다.

연령에 의한 역할수용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인 종사원은 4.07, 30세에서 35세 미만인 종사원은 3.86, 36세에서 40세까지는 3.94, 41세에서 45세까지는 3.98, 46세 이상은 3.84이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25) 사후분석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다중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수준간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될 경우라도 통계검증으로 식별된 전반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종속변수를 탐색하는 분석이다. 대안가설이 채택되더라도 표본평균 요인수준간의 어디에 유의한 차이가 있거나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중비교는 수준들의 평균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시킨 후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을 별표로 표시해준다. SPSS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다중비교 방법은 10여 가지가 있으나, 동일한 표본 평균의 각 요인수준에서 구체적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최소유의차(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본페로니(Bonferroni) 방법이라고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박성현 외(1999: 161-165), 이준형(1998: 458-468), Hair, Jr. 외(1998: 355-357)를 참고하기 바란다.

26) 사전분석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주요 종속변수가 최대의 설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분리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를 권장하는데, 선택된 변수에 대한 일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이 가장 일반적인 사전분석 방법이다(*ibid.*, p. 355).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집단과 주어진 각 종속변수간의 차이에 대한 t검증이 사전분석의 예이다.

27) 모집단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관심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하나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쓰인 경우를 일원배치법(one-way factorial design)이라고 하며 요인 수준간의 평균차이에 관한 검증이 주요 관심 사항이다. 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검증한다(박성현 외, 1999: 158-165).

검증결과, 유의확률 $p=0.291$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연령에 따른 역할수용의 대비검증 결과를 보면, 통계량의 t 값이 0.135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0.893$ 으로써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연령에 따른 역할수용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후분석으로 연령에 따른 역할수용을 다중 비교한 결과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의한 공식통제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인 종사원은 5.27, 30세에서 35세 미만인 종사원은 5.26, 36세에서 40세까지는 5.14, 41세에서 45세까지는 4.98, 46세 이상은 5.38이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432$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 F 값이 0.918이고 유의확률 $p=0.455$ 로서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연령에 따른 공식통제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으로 연령에 따른 공식통제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의한 비공식통제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인 종사원은 4.33, 30세에서 35세 미만인 종사원은 3.90, 36세에서 40세까지는 3.79, 41세에서 45세까지는 4.00, 46세 이상은 4.00이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138$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 F 값이 0.920이고 유의확률 $p=0.454$ 으로써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연령에 따른 비공식통제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으로 연령에 따른 비공식통제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에 의한 규제에 대한 동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인 종사원은 4.93, 30세에서 35세 미만인 종사원은 4.47, 36세에서 40세까지는 4.60, 41세에서 45세까지는 4.40, 46세 이상은 4.76이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842$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1.008이고 유의확률 $p=0.405$ 로써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연령에 따른 규제에 대한 동의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으로 연령에 따른 규제에 대한 동의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에 의한 기회주의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30세 미만인 종사원은 2.27, 30세에서 35세 미만인 종사원은 3.12, 36세에서 40세까지는 3.36, 41세에서 45세까지는 3.49, 46세 이상은 3.10이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004$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적으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각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이때에는 대비검증을 수행하여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의 t값과 그 유의확률을 가지고 가설채택여부를 결정한다(최규정·손영남, 2000: 174). 연령에 따른 기회주의의 대비검증 결과를 보면, 통계량의 t값이 -2.267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0.029$ 로써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적으므로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연령에 따른 기회주의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으로 연령에 따른 기회주의를 다중 비교한 결과,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에 의한 순응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인 종사원은 5.80, 30세에서 35세 미만인 종사원은 5.67, 36세에서 40세까지는 6.08, 41

세에서 45세까지는 5.85, 46세 이상은 5.95이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573$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1.292이고 유의확률 $p=0.275$ 로써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연령에 따른 순응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후분석으로 연령에 따른 순응을 다중 비교한 결과,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30-35세 사이와 36세-40세 사이의 연령에서 순응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6> 연령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구 분	30세 미만	30-35세	36-40세	41-45세	46세 이상	등분산 검증		F값	P값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통계량	유의 확률		
역할수용	4.07 (0.37)	3.86 (0.62)	3.94 (0.56)	3.98 (0.71)	3.84 (0.80)	1.252	0.292	0.415	0.798
공식통제	5.27 (1.04)	5.26 (0.88)	5.14 (1.09)	4.98 (1.03)	5.38 (1.14)	0.958	0.432	0.918	0.455
비공식통제	4.33 (0.24)	3.90 (0.56)	3.79 (0.86)	4.00 (0.63)	4.00 (0.86)	1.767	0.138	0.920	0.454
규제동의	4.93 (0.83)	4.47 (1.00)	4.60 (1.09)	4.40 (1.04)	4.76 (0.99)	0.353	0.842	1.008	0.405
기회주의	2.27 (0.55)	3.12 (1.04)	3.36 (1.55)	3.49 (1.60)	3.10 (1.37)	3.953	0.004	-2.267 (t 값)	0.029*
순응	5.80 (1.10)	5.66 (0.90)	6.08 (0.79)	5.85 (0.83)	5.95 (0.92)	0.730	0.573	1.292	0.275

* : p<0.05 수준에서 평균차이가 큼

나. 학력별 차이분석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학력에 따라 역할수용,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규제에 대한 동의, 기회주의, 순응 등의 변수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한 F검증 결과를 <표 IV-7>에 나타냈다. 이들 변수 중에서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력에 의한 역할수용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인 종사원이 갖는 역할수용은 3.97, 전문대학을 졸업한 종사원의 역할수용은 3.93, 대학교를 졸업한 종사원의 역할수용은 3.87, 대학원을 졸업한 종사원의 경우는 3.83이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186$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이 0.247이고 유의확률 $p=0.863$ 으로써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는 학력에 따른 역할수용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으로 학력에 따른 역할수용을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에 의한 공식통제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인 종사원이 갖는 공식통제는 5.56, 대학을 졸업한 종사원의 공식통제는 5.18, 대학교를 졸업한 종사원의 공식통제는 5.09, 대학원을 졸업한 종사원의 경우는 5.08이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206$ 으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이 1.933이고 유의확률 $p=0.126$ 으로써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는 학력에 따른 공식통제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사후분석으로 학력에 따른 공식통제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고졸이하와 대학교졸 사이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력에 의한 비공식통제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인 종사원이 갖는 비공식통제는 4.06, 대학을 졸업한 종사원의 비공식통제는

3.99, 대학교를 졸업한 종사원의 비공식통제는 3.87, 대학원을 졸업한 종사원의 경우는 4.08이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651$ 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이 0.722이고 유의확률 $p=0.540$ 으로써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는 학력에 따른 비공식통제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으로 학력에 따른 비공식통제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에 의한 규제에 대한 동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인 종사원이 갖는 규제에 대한 동의는 4.61, 대학을 졸업한 종사원의 규제에 대한 동의는 4.48, 대학교를 졸업한 종사원의 규제에 대한 동의는 4.57, 대학원을 졸업한 종사원의 경우는 5.57이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745$ 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이 1.663이고 유의확률 $p=0.177$ 로써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규제에 대한 동의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사후분석으로 학력에 따른 규제에 대한 동의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고졸과 대학원졸 사이, 대졸과 대학원졸 사이, 그리고 대학교졸과 대학원졸과 사이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력에 의한 기회주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인 종사원이 갖는 기회주의는 2.87, 대학을 졸업한 종사원의 기회주의는 3.34, 대학교를 졸업한 종사원의 기회주의는 3.34, 대학원을 졸업한 종사원의 경우는 2.67이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660$ 으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

택한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이 1.382이고 유의확률 $p=0.250$ 으로써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는 학력에 따른 기회주의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으로 학력에 따른 기회주의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에 의한 순응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인 종사원이 갖는 순응은 5.81, 대학을 졸업한 종사원의 순응은 5.91, 대학교를 졸업한 종사원의 순응은 5.88, 대학원을 졸업한 종사원의 경우는 6.33이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249$ 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이 0.449이고 유의확률 $p=0.719$ 로써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는 학력에 따른 순응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으로 학력에 따른 순응을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7> 학력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구 분	고졸	대학졸	대학교 졸	대학원 졸	등분산 검증		F값	P값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통계량	유의 확률		
역할수용	3.97 (0.61)	3.93 (0.72)	3.87 (0.70)	3.83 (0.43)	1.622	0.186	0.247	0.863
공식통제	5.56 (1.08)	5.18 (1.06)	5.09 (1.02)	5.08 (0.42)	1.538	0.206	1.933	0.126
비공식통제	4.06 (0.74)	3.99 (0.79)	3.87 (0.72)	4.08 (0.42)	0.547	0.651	0.722	0.540
규제동의	4.61 (1.04)	4.48 (1.11)	4.57 (0.96)	5.57 (0.98)	0.412	0.745	1.663	0.177
기회주의	2.87 (1.18)	3.34 (1.37)	3.34 (1.47)	2.67 (1.28)	0.533	0.660	1.382	0.250
순응	5.81 (1.01)	5.91 (0.86)	5.88 (0.85)	6.33 (0.54)	1.386	0.249	0.449	0.719

다. 직급별 차이분석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직급에 따라 역할수용,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규제에 대한 동의, 기회주의, 순응 등의 변수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한 F검증 결과를 <표 IV-8>에 나타냈다. 이들 변수 중에서 직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공식통제, 규제에 대한 동의, 기회주의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직급에 의한 역할수용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9급은 4.05, 8급은

3.87, 7급은 3.74, 6급은 3.62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199$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1.697이고 유의확률 $p=0.171$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직급에 따른 역할수용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직급에 따른 역할수용을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9급과 7급 사이 상호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직급에 의한 공식통제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9급은 5.38, 8급은 4.83, 7급은 4.91, 6급은 5.67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026$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적으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각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이때에는 대비검증을 수행하여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의 t값과 그 유의확률을 가지고 가설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직급에 따른 공식통제의 대비검증 결과를 보면, 통계량의 t값이 0.973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0.333$ 으로서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크므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사후분석으로 직급에 따른 공식통제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9급과 8급 및 9급과 7급 사이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직급에 의한 비공식통제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9급은 3.87, 8급은 3.93, 7급은 3.90, 6급은 3.48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276$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0.770이고 유의확률 $p=0.513$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직급에 따른 비공식통제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직급에 따른 비공식통제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각 직급 상호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급에 의한 규제에 대한 동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9급은 4.85, 8급은 4.37, 7급은 4.58, 6급은 3.67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776$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3.455이고 유의확률 $p=0.019$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적으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각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직급에 따른 규제에 대한 동의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급이 높은 학교급식 종사원 일수록 규제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직급에 따른 규제에 대한 동의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9급과 8급 사이 및 9급과 6급 사이, 7급과 6급 사이 상호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직급에 의한 기회주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9급은 2.85, 8급은 3.72, 7급은 3.89, 6급은 3.14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018$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적으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각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이때에는 대비검증을 수행하여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의 t값과 그 유의확률을 가지고 가설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직급에 따른 기회주의의 대비검증 결과를 보면, 통계량의 t값이 -2.295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0.024$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적으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각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직급에 따른 기회주의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급이 높은 학교급식 종사원일수록 기회주의의 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직급에 따른 기회주의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9급과 8급 사이 및 9급과 7급 사이 상호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직급에 의한 순응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9급은 5.91, 8급은 5.63, 7급은 5.94, 6급은 5.48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813$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1.372이고 유의확률 $p=0.269$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직급에 따른 순응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직급에 따른 순응을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8> 직급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구 분	9급	8급	7급	6급	등분산 검증		F값	P값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통계량	유의 확률		
역할수용	4.05 (0.74)	3.87 (0.59)	3.74 (0.70)	3.62 (0.99)	1.572	0.199	1.697	0.171
공식통제	5.38 (1.11)	4.83 (0.91)	4.91 (1.12)	5.67 (0.47)	3.199	0.026	0.973 (t값)	0.333
비공식통제	3.87 (0.87)	3.93 (0.60)	3.90 (0.73)	3.48 (0.50)	1.305	0.276	0.777	0.513
규제동의	4.85 (0.91)	4.37 (1.03)	4.58 (0.98)	3.67 (1.09)	0.368	0.776	3.455	0.019*
기회주의	2.85 (1.09)	3.72 (1.21)	3.89 (1.59)	3.14 (1.30)	3.470	0.018	-2.295	0.024*
순응	5.91 (0.86)	5.63 (0.92)	5.94 (0.91)	5.48 (0.74)	0.317	0.813	1.327	0.269

* : $p < 0.05$ 수준에서 평균차이가 큼

라. 직책별 차이분석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직책에 따라 역할수용,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규제에 대한 동의, 기회주의, 순응 등의 변수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한 F검증 결과를 <표 IV-9>에 나타냈다. 이들 변수 중에서 직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다. 사후분석은 집단이 세 개 이상일 때 가능하므로, 직책을 두개의 집단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사후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직책에 의한 역할수용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영양사는 3.87, 조리사는 3.95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354$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0.546이고 유의확률 $p=0.461$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직책에 따른 역할수용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직책에 의한 공식통제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영양사는 5.08, 조리사는 5.37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305$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3.354이고 유의확률 $p=0.069$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직책에 따른 공식통제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직책에 의한 비공식통제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영양사는 3.91, 조리사는 3.99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520$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

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0.510이고 유의확률 $p=0.476$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직책에 따른 비공식통제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직책에 의한 규제에 대한 동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영양사는 4.59, 조리사는 4.57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993$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0.028이고 유의확률 $p=0.867$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직책에 따른 규제에 대한 동의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직책에 의한 기회주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영양사는 3.39, 조리사는 3.02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985$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3.319이고 유의확률 $p=0.070$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직책에 따른 기회주의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직책에 의한 순응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영양사는 5.87, 조리사는 5.90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453$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0.041이고 유의확률 $p=0.839$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직책에 따른 순응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IV-9> 직책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구 분	영양사	조리사	등분산 검증		F값	P값
	평균 (Std.)	평균 (Std.)	통계량	유의 확률		
역할수용	3.87 (0.70)	3.95 (0.66)	0.863	0.354	0.546	0.461
공식통제	5.08 (1.01)	5.37 (1.07)	1.059	0.305	3.354	0.069
비공식통제	3.91 (0.69)	3.99 (0.80)	0.415	0.520	0.510	0.476
규제동의	4.59 (1.01)	4.57 (1.05)	0.000	0.993	0.028	0.867
기회주의	3.39 (1.41)	3.02 (1.34)	0.000	0.985	3.319	0.070
순응	5.87 (0.84)	5.90 (0.93)	0.565	0.453	0.041	0.839

마. 재직기간별 차이분석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에 따라 역할수용,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규제에 대한 동의, 기회주의, 순응 등의 변수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한 F검증 결과를 <표 IV-10>에 나타냈다. 이들 변수 중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역할수용, 공식통제, 기회주의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직기간에 의한 역할수용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3년 이하는 4.12, 4년에서 9년은 4.12, 10년에서 14년은 3.71, 15년 이상은 2.50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950$ 으로서 유의

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6.617이고 유의확률 $p=0.000$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적으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각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재직기간에 따른 역할수용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직기간이 긴 학교급식 종사원 일수록 역할수용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역할수용을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3년 이하의 급식종사원과 10년에서 14년 및 15년 이상인 급식종사원, 4년에서 9년의 급식종사원과 10년에서 14년 및 15년 이상인 급식종사원 상호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직기간에 의한 공식통제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3년 이하는 5.42, 4년에서 9년은 5.44, 10년에서 14년은 4.79, 15년 이상은 5.67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490$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5.904이고 유의확률 $p=0.001$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적으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두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재직기간에 따른 공식통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직기간이 긴 학교급식 종사원 일수록 공식통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으로 재직기간에 따른 공식통제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3년 이하의 급식종사원과 4년에서 9년 및 10년에서 14년의 급식종사원 상호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직기간에 의한 비공식통제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3년 이하는 4.12, 4년에서 9년은 3.96, 10년에서 14년은 3.87, 15년 이상은 3.67로 나

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251$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0.684이고 유의확률 $p=0.563$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재직기간에 따른 비공식통제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비공식통제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각 재직기간 상호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재직기간에 의한 규제에 대한 동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3년 이하는 4.77, 4년에서 9년은 4.62, 10년에서 14년은 4.51, 15년 이상은 3.33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675$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1.394이고 유의확률 $p=0.246$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재직기간에 따른 규제에 대한 동의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비공식통제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각 재직기간 상호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재직기간에 의한 기회주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3년 이하는 2.40, 4년에서 9년은 3.09, 10년에서 14년은 3.67, 15년 이상은 3.00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017$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적으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각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이때에는 대비검증을 수행하여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의 t값과 그 유의확률을 가지고 가설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재직기간에 따른 기회주의의 대비검증 결과를 보면, 통계량의 t값이 -3.699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0.000$ 으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적으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고 각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대안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재직기간에 따른 기회주의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직기간이 긴 학교급식 종사원일수록 기회주의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기회주의를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3년 이하의 급식종사원과 4년에서 9년 및 10년에서 14년의 급식종사원 상호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직기간에 의한 순응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3년 이하는 6.21, 4년에서 9년은 5.89, 10년에서 14년은 5.78, 15년 이상은 5.50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확률 $p=0.279$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F값이 1.307이고 유의확률 $p=0.274$ 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재직기간에 따른 순응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순응을 다중 비교한 결과에서는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0> 재직기간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구 분	3년 이상	4년-9년	10년-14년	15년 이상	등분산 검증		F값	P값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통계량	유의 확률		
역할수용	4.12 (0.80)	4.02 (0.62)	3.71 (0.66)	2.50 (0.71)	0.118	0.950	6.617	0.000**
공식통제	5.42 (1.03)	5.44 (0.97)	4.97 (1.06)	5.67 (0.47)	0.810	0.490	5.904	0.001**
비공식통제	4.12 (0.97)	3.96 (0.68)	3.87 (0.75)	3.67 (0.00)	1.377	0.251	0.684	0.563
규제동의	4.77 (1.15)	4.62 (0.98)	4.51 (1.04)	3.33 (0.94)	0.511	0.675	1.394	0.246
기회주의	2.40 (1.24)	3.09 (1.18)	3.67 (1.58)	3.00 (1.41)	3.490	0.017	-3.699 (t값)	0.000**
순응	6.21 (0.94)	5.89 (0.86)	5.78 (0.89)	5.50 (0.24)	1.291	0.279	1.307	0.274

** : p<0.01 수준에서 평균차이가 큼

바. 특성별 차이분석 요약

이상과 같이 살펴본 종사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IV-11>과 같다.

우선,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인 99.4%가 여성이므로 성별에 따른 두 집단간의 차이분석은 의미가 없어 검증을 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회주의에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나, 역할수용,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규제동의, 순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즉 연령이 많은 학교급식 종사원 일수록 기회주의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연령별에 대한 사후분석의 결과 순응 변수에서 평균에 유의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연령층이 발견되었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별에 대한 사후분석의 결과 공식통제 및 규제동의 변수에서 평균에 유의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학력층이 발견되었다.

직급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규제동의 및 기회주의 변수에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사후분석의 결과, 역할수용, 공식통제, 규제동의 기회주의에서 평균에 유의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직급들이 발견되었다.

직책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후분석의 결과에서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직책이 발견되지 않았다.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할수용, 공식통제, 기회주의 변수에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재직기간이 많은 학교급식 종사원일수록 역할수용의 정도가 낮으며, 공식통제에 길들어 졌으며, 더 많은 기회주의 성향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재직기간에 대한 사후분석의 결과 역할수용, 공식통제, 기회주의 변수들에서 평균에 유의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재직기간들이 발견되었다.

<표 IV-11> 특성별 차이에 대한 분석 요약

구 분	연령별	학력별	직급별	직책별	재직기간별
역할수용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있음*
공식통제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있음*
비공식통제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규제동의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있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기회주의	차이 있음	차이 없음	차이 있음*	차이 없음	차이 있음*
순응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 음영된 부분은 변수간 상호 평균차이가 있음, * : 다중비교 결과 0.05 수준에서 평균차이가 큼

제 4 절 모형 및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분석모형에 따른 주요 구성개념들의 관계, 즉 학교급식에 있어서 식품위생규제의 역할수용이 통제과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론구성과 연구설계에 의하여 나타난 제 요인에 관한 인과관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모형의 적합성과 가설을 검증하였다. 우선 제 변수간의 관계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검토하였다. 가설에 대한 구성개념간의 인과관계를 AMOS 4.0으로 선형구조분석을 통해 얻은 적합지수와 고정지수를 가지고 검증하였다.

1.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따른 주요 구성개념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여 상관관계가 <표 IV-12>에 나타나 있다.²⁸⁾

<표 IV-12> 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역할수용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규제동의	기회주의	순응
역할수용	1.000					
공식통제	-.273**	1.000				
비공식통제	.245**	-.074	1.000			
규제동의	.338**	.141	.348**	1.000		
기회주의	-.136**	.386**	-.048	-.067	1.000	
순응	.164*	.298**	.095	.428**	-.122	1.000*

주) * : 상관관계 계수가 $p < 0.05$ 에서 유의하며, ** : 상관관계 계수가 $p < 0.01$ 에서 유의함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상호관계를 보면, 사용한 측정도구의 적절한 심리측정의 특성치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 사이의 상관계수는 충분히 낮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음을 의미한다.²⁹⁾ 모든 변수들이 비록 원천편차

28) 상관계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계수의 크기 및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가 $r < 0.20$ 일 때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관계라고 하고, $0.20 \leq r \leq 0.40$ 이면 낮은 관계, $0.40 \leq r \leq 0.70$ 이면 비교적 높은 관계, $0.70 \leq r \leq 0.90$ 이면 높은 관계, $r > 0.90$ 이면 아주 높은 관계라고 한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0.3 이상을 만족스러운 관계로 본다. 그렇지만 $r = 0.40$ 은 $r = 0.20$ 에 비해 두 배 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Ajzen과 Fishbein(1980: 99), 또한 상관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호정(1994: 308-312) 참고

29)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인데, Hair, Jr. 외

(source bias) 또는 일반방법변량(general method variance)의 가능성을 내보이는 자기보고(self-report) 데이터에 기초하였다고 할지라도 독립변수들 사이의 낮은 상관관계는 공통방법변량(common method variance)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유의한 상관관계는 순응과 규제 동의를 관계($r=0.428$)이며, 가장 낮은 유의한 상관관계는 기회주의와 역할수용의 관계($r=-0.136$)이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할수용의 경우 순응과의 관계에서는 $p<0.05$ 유의수준에서 정(+)의 유의한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역할수용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순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역할수용과 기회주의와의 관계에서는 $p<0.01$ 유의수준에서 부(-)의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역할수용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회주의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역할수용과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규제에 대한 동의와의 관계에서는 $p<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역할수용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공식통제는 줄어드는 반면에, 비공식통제 및 규제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1998: 99)는 어느 정도의 다중공선성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상호 관련된 변수들을 밝혀내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도를 넘은 다중공선성은 결정계수가 크거나 회귀식이 유의하더라도, 각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는 의미가 없게 나타나서 회귀식을 신뢰할 수 없어 일반화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비교적 자주 이용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상관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R-square)를 이용할 수 있다. 분석결과 산출된 결정계수가 비교적 큰 값이지만, 결정계수나 회귀계수가 통계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독립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단순상관계수가 높은 것이 발견된다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순상관계수 $r=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허용오차를 들 수 있는데, 허용오차가 아주 작다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 결정계수 $r=0.00$ 으로 유의미하고, 가장 큰 단순상관계수가 $r=0.80$ 이하이며, 허용오차가 충분히 커서 세 가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다. 다중공선성이 발견된다면, 상관관계가 높은 두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통합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두 변수가 이질적인 것이어서 통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두 변수 가운데 하나를 제거하는 방법이 흔히 쓰인다. 김호정(1994: 352-354) 참고

둘째, 공식통제 변수와 이의 영향변수인 기회주의와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정(+)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며 순응과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정(+)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식통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기회주의 및 순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비공식통제 변수와 규제에 대한 동의와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정(+)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통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규제에 대한 동의의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규제에 대한 동의 변수와 이의 영향 관계에 있는 순응과의 관계에서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 방향의 영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대한 동의가 강할수록 순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2. 분석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분석모형 검증은 2단계를 거쳐 실시하였다. 우선 가설의 분석방법으로 사용한 선형구조관계 분석기법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가설에 대한 구성개념간의 인과관계를 경로계수와 고정지수(t값) 등을 가지고 검증하였다.

가.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설의 분석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4.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선형구조관계 분석은 기존의 자료속에 존재하는 분석모형을 발견하는 탐색적 요인방식이라기 보다는 가설분석모형이 표본자료에 대응하여 얼마나 지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확인적 요인방식을

의미한다(이순목, 1990: 23-36).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적 분석모형에 대해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선형구조관계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변수들 사이에서 상관관계 또는 공분산 그리고 인과관계를 계산하여 표시하고 이들을 하나의 경로로 묶어 모형을 구축하게 되는 분석이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은 일련의 반응변수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검토 및 검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변량통계기법이나 회귀분석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일종의 확장성을 가진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반응변수는 또 다른 설명변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2원적인 개념모형이 동시에 이루어져 서로간의 효과를 비교 검정하고 모형의 발전과정과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이다(허준·최이규, 2000: 3-5).

AMOS 분석은 LISREL처럼 표본자료에 대한 가설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척도를 제공하는데, 주로 모형의 전반적 부합도(절대부합지수), 기초모형에 대한 경쟁모형의 부합도(증분부합지수), 간명부합지수, 그리고 고정지수 등이다. 본 연구의 모수추정치는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 ML)으로 도출하였으며, 전체모형의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값(χ^2) 등의 부합지수를 적용한다.

표본자료 산출방법인 최대가능법(ML)은 관찰변수들이 수량변수이고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가지고, 표본자료를 표준상관행렬과 모형예측 상관행렬 요소의 차이제곱을 최소화하여 산출 가능성의 최대화 기준에 따라 미지수 값을 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조선배, 1996: 179).

부합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절대부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는 연구모형(구조모형과 측정모형)의 관찰된 공변량행렬이나 상관관계행렬에 의해 예측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주로 이용되는 절

대부합지수는 카이제곱값(χ^2),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그리고 평균제곱잔차제곱근지수(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등이 있다.

카이제곱값은 자료의 정규분포를 근거로 계산되며, 유의수준은 그 차이가 표본변동 때문이라는 확률적 의미를 나타낸다. 자유도보다 상대적으로 큰 카이제곱값은 관찰행렬과 추정행렬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카이제곱 검증에서 자유도는 의미가 매우 크며 모수에 가깝기 때문에 카이제곱값이 자유도에 근접할수록 모수에 근접하게 된다. 여기서 카이제곱값에 대한 유의수준 p값이 유의한 차이가 나온 카이제곱값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즉 카이제곱값은 표본집단의 크기, 측정변수의 과도한 비대칭도, 모델의 복잡한 정도, 또는 모델검증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다(Bollen, 1989: 435). 즉 기본적으로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에 위배되거나, 표본추출이 잘못되어 관찰자료가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안모델에 대한 개념설정의 오류일 가능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측면은 카이제곱값이 매우 크고 그 확률치가 매우 작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안모델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부합도가 좋은 모델일 가능성이 크며, 모델검증의 많은 조건들이 위배되었을 경우가 있으므로 부합도 판단을 전적으로 카이제곱값에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여러 부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Fornell, 1983: 443-448).

기초부합지수(GFI)는 표본크기와 무관하며 비정규성에 엄격한 통계량이다. 이 통계량은 확률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분포는 카이제곱값과 같이 표본크기에 의존한다. 이 값은 0과 1.0 사이에 있으며, GFI가 0이면 모형은 부적합하고, 1.0이면 완벽하게 일치함을 의미한다. 이 값이 크면

좋은 부합도를 나타내지만 수용가능성을 판정하는 절대기준은 아니다.

평균제곱잔차제곱근(RMR)은 부합된 잔차의 평균을 측정한다. 즉, 분석자료의 기초행렬과 재생산된 행렬간의 원소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 준다. 모든 잔차가 0이면 RMR도 0이 되고 따라서 모형은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둘째, 증분부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는 연구모형을 기초모형³⁰⁾과 비교하는데 이용되는 측정지수로서 Bentler의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NFI)³¹⁾와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등이 있다. 이들 값의 범위는 0과 1.0 사이에 있으며 값이 클수록 높은 수준의 부합도를 나타낸다.

셋째, 간명부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는 연구모형의 간명성(parsimony) 즉, 모형이 각 추정계수에 필요한 부합도에 최대로 도달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측정지수이다. 간명부합지수에는 간명기초부합지수(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 PGFI) 등이 있다. PGFI는 높을수록 좋으나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적절한 부합도라 할 수 있다(강병서, 1999: 426).

넷째, 고정지수 T값은 연구모형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indogenous variable) 간의 관계(Gamma) 및 매개 내생변수와 내생변수 간의 관계(Beta)에 대한 통합개념으로서 경로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지수이다. AMOS에서는 CR(critical ratio) 값으로 나타낸다. CR값은 경로계수

30) 기초모형(null model)은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초모형은 모든 예측변수들이 그 개념을 완벽하게 측정한다고 가정하는 단일개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배(1996: 10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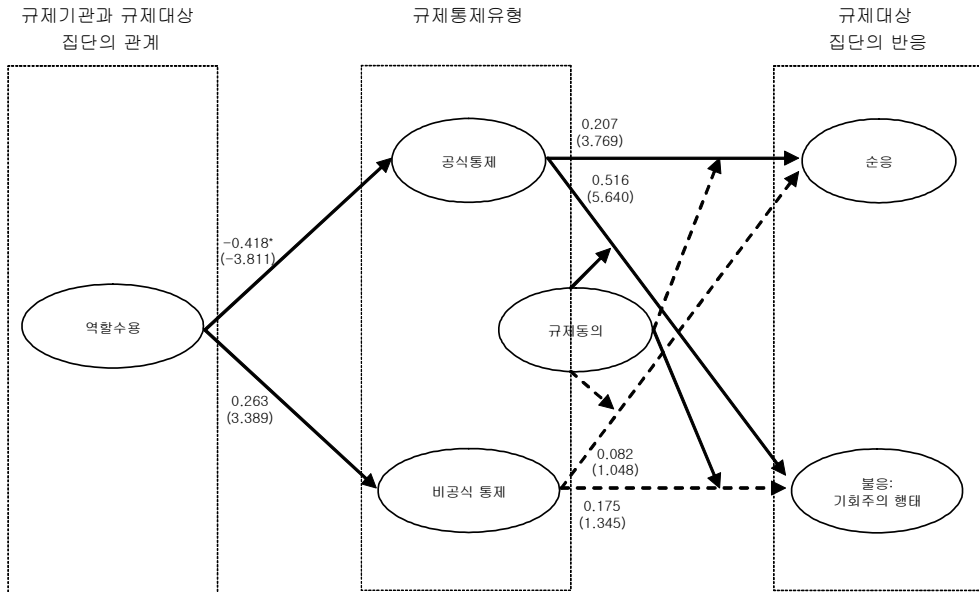
31) 이 지수는 평가모형에서 구해진 카이제곱값의 통계량과 모든 예측 모수들을 0으로 한, 즉 모형의 각 변수간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상정했을 때의 null 모형의 카이제곱값을 비교하여 평가하려는 모형이 표본의 자료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려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 지수는 표본자료가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설명하면 1, 그렇지 못하면 0을 나타낸다. 즉 평가하려는 모형이 표본의 자료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Bentler와 Bonett(1980: 588-606) 참고

를 표준오차로 나눈 값이다. 고정지수 검증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되면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으며,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본다.³²⁾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95%에서 CR값이 1.96을 넘는 경로계수는 $\alpha = 0.05$ 수준에서 경로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이제곱값(χ^2)을 비롯하여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원소간평균차이(RMR) 등의 절대부합지수와 간명기초부합지수(PGFI), 표준부합지수(NFI), 증대부합지수(IFI), 비교부합지수(CFI) 등의 증분부합지수, 그리고 간명기초부합지수 등의 간명부합지수, PCLOSE(p for test of close fit) 등의 적합도 지수를 가지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고정지수를 가지고 가설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32)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이용되는 CR값의 최대 허용치인 표준정규분포 Z통계량은 유의수준 90%에서 ± 1.645 , 유의수준 95%에서는 ± 1.96 , 그리고 유의수준 99%에서는 ± 2.576 이다.

<그림 IV-2> 분석모형



주) 별표는 경로계수, 괄호 안은 t값, 실선은 유의한 관계를 의미하고 점선은 비유의한 관계를 의미함

나. 분석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제시되었던 외생변수 즉 역할수용이 매개 내생변수 즉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내생변수인 기회주의와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책반응행위의 영향요인을 정책적·이론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기반이 되는 전체모형(overall model)을 검증한 결과, 도출된 적합도 지수를 <표 IV-1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V-13> 분석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기준	권장수준	분석모형
절대부합지수		
· 카이제곱값(χ^2) : 자유도		38.802 : 7
· p-값	$p > 0.05$	0.000
· GFI(기초부합지수)	1의 근사치	0.968
· AGFI(조정부합지수)	1의 근사치	0.978
· RMR(원소간평균차이)	0.05 이하	0.064
증분부합지수		
· NFI(표준적합지수)	1의 근사치	0.989
· IFI(증대적합지수)	1의 근사치	0.991
· CFI(비교적합지수)	1의 근사치	0.991
간명부합지수		
· PGFI(간명기초부합지수)	0.6 이상	0.645
기타부합지수		
· PCLOSE(p for test of close fit)	$p \leq 0.5$	0.000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카이제곱값(χ^2) = 38.802, 자유도(df) = 7, χ^2 에 대한 p값 = 0.000으로 카이제곱값과 자유도, 그리고 p값만으로 볼 때는 유의한 값이 되어 연구모형과 분석자료가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³³⁾ 그러나 카이제곱값이 매우 크고 그 확률값($p=0.000$)이 매우 작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여 가설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분석모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적합도가 좋은 모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이제곱값에만 의존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부합지수를 같이 고려하여 분석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른 부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기초부합

33) 카이제곱값과 표본크기는 매우 민감한 사항인데 표본크기가 100-200개 범위 이내에 있을 때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적절한 카이제곱값을 얻을 수 있으며, 표본크기가 이 범위를 벗어날 때 계산되는 카이제곱값은 표본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본크기가 200개 이상으로 증가하면 대부분의 경우 카이제곱값은 신뢰하기 어렵다. 조선배(1996: 101-104) 참고

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표준부합지수(NFI), 증대부합지수(IFI), 비교부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까우며, PCLOSE 값은 0.00으로 0.5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들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해 보면 본 연구 모형은 표본자료와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외생변수, 매개 내생변수, 내생변수 등 구성개념간의 영향관계를 AMOS의 선형구조분석을 통해 얻은 경로계수와 표준오차, 그리고 고정지수(t값) 등을 가지고 검증하였다. 각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역할수용

H1 역할수용이 증가할수록 공식통제는 감소할 것이다.

H2 역할수용이 증가할수록 비공식통제도 증가할 것이다.

첫째, 역할수용의 증가는 비공식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표 IV-14>와 같이 역할수용이 공식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수용은 경로계수 -0.418, 표준오차 0.110,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3.811로 공식통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할수용이 증가할수록 공식통제는 감소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역할수용이 비공식통제와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역할수용의 증가는 비공식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표 IV-14>와 같이 역할수용이 비공식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수용은 경로계수 0.263, 표준오차 0.078,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3.389로 공식통제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할수용은 공식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역할수용은 공식통제와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IV-14> 역할수용의 규제통제유형에 미치는 영향성

가 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채택여부
가설 1. 역할수용 → 공식통제	-0.418	0.110	-3.811	0.000	채택
가설 2. 역할수용 → 비공식통제	0.263	0.078	3.389	0.001	채택

나. 규제통제와 규제대상집단의 반응

H3 공식통제는 순응과 정(+)²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H4 비공식통제는 순응과 정(+)²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H5 공식통제가 증가할수록 기회주의 행태는 증가할 것이다.

H6 비공식통제가 증가할수록 기회주의 행태는 감소할 것이다.

첫째, 공식통제는 순응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표 IV-15>와 같이 공식통제가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통제는 경로계수 0.207, 표준오차 0.055,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3.769로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식통제는 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공식통제와 순응과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요하

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비공식통제는 순응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표 IV-15>와 같이 비공식통제가 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통제는 경로계수 0.073, 표준오차 0.081,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0.909로 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통제는 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비공식통제와 순응과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공식통제가 증가할수록 기회주의 행태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5>를 검증한 결과 <표 IV-15>와 같이 공식통제가 기회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통제는 경로계수 0.516, 표준오차 0.091,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5.640으로 기회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식통제가 증가할수록 기회주의 행태는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공식통제와 순응과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넷째, 비공식통제가 증가할수록 기회주의 행태는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6>을 검증한 결과 <표 IV-15>와 같이 비공식통제가 기회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통제는 경로계수 0.175, 표준오차 0.130, 유의수준 0.05에서 t값이 1.345로 기회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통제는 기회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가설 6>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비공식통제와 기회주의와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IV-15> 규제통제의 규제대상 집단에 대한 영향성

가 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채택여부
가설 3. 공식통제→ 순응	0.207	0.055	3.769	0.000	채택
가설 4. 비공식통제→ 순응	-0.082	0.078	-1.048	0.294	기각
가설 5. 공식통제→ 기회주의	0.516	0.091	5.640	0.000	채택
가설 6. 비공식통제→ 기회주의	0.175	0.130	1.345	0.178	기각

다. 규제동의를의 조절효과

H7 규제에 대한 동의가 낮을 때 보다는 높을 때에는 공식통제와 순응 사이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H8 규제에 대한 동의가 낮을 때 보다는 높을 때에는 비공식통제와 순응 사이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H9 규제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을 경우 공식통제와 기회주의 사이의 관계는 규제에 대한 동의수준이 낮을 경우에 비해 더 약할 것이다.

H10 규제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을 경우 비공식통제와 기회주의 사이의 관계는 규제에 대한 동의수준이 낮을 경우에 비해 더 강할 것이다.

첫째, 규제동의를 낮을 때 보다는 높을 때에는 공식통제와 순응 사이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7>을 검증하기 위해 규제동의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두 하위집단으로 나누고 회귀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IV-16>에 요약된 바와 같이 두 하위집단간 회귀계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에 대한 동의정도

는 공식통제와 순응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규제동의를 낮을 경우 보다는 높을 때에는 비공식 통제와 순응 사이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8>을 검증한 결과 <표 IV-16>과 같이 두 하위집단간 회귀계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동의를 비공식 통제와 순응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규제동의를 높을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 비해 공식통제와 기회주의 사이의 관계가 더 약할 것이라는 <가설 9>를 검증하기 위해 규제동의정도를 조절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규제동의를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의 회귀계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I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하위집단간 회귀계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식통제와 기회주의 사이에는 동의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동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동의를 공식통제와 기회주의 행태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규제동의를 높을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 비해 비공식 통제와 기회주의 사이의 관계가 더 강할 것이라는 <가설 10>을 검증하기 위해 규제동의를 조절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I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제동의를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의 회귀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동의 높은 경우에는 비공식 통제는 기회주의 행태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6> 규제순응에 대한 규제동의를의 조절효과

가 설	규제동의를가 높은 집단	규제동의를가 낮은 집단	회귀계수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
가설 7. 공식통제→ 순응	.19	.20	p > .05
가설 8. 비공식 통제→ 순응	.07	-.08	p > .05
가설 9. 공식통제→ 기회주의	.14	.52**	p < .05
가설 10. 비공식통제→ 기회주의	-.09	.22*	p < .05

라.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가설을 선형구조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IV-17>과 같다. 가설 1에서 2까지는 규제기관과 정책대상 집단의 관계가 규제통제형태와의 관계에 대하여 학교급식종사원의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에 대한 인식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역할수용의 공식통제에 대한 영향관계(경로계수=-0.418, t값=-3.811, p=0.000)는 많은 연구자들이 중요성을 주장한 바처럼 강하게 지지되었으며, 역할수용의 비공식통제에 대한 영향관계(경로계수=0.263, t값=3.389, p=0.001) 역시 그 영향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외생변수인 역할수용 변수는 매개 내생변수인 비공식통제와 공식통제와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고 본 연구모형을 설명하는데 있어 영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설 3에서 6까지는 규제통제형태가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비공식통제가 순응(경로계수=0.082, t값=1.048, p=0.294) 및 기회주의(경로계수=0.175, t값=1.345, p=0.178)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지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식통제가 순응(경로계수=0.207, t값=3.769, p=0.000) 및 기회주의(경로계수=0.516, t값=5.640, p=0.000)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공식통제의 순응 및 기회주의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7에서 10까지는 규제에 대한 동의가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규제동의를 공식통제와 규제순응 사이의 관계와 비공식통제와 규제순응 사이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규제동의를 공식통제와 기회주의 사이의 관계와 비공식통제와 기회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급식 종사원들의 규제에 대한 동의 및 긍정적인 태도가 공식통제에 따른 기회주의 행태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표 IV-17>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가 설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p값	채택 여부
가설 1. 역할수용→ 공식통제	-0.418	0.110	-3.811	0.000	채택
가설 2. 역할수용→ 비공식통제	0.263	0.078	3.389	0.001	채택
가설 3. 공식통제→ 순응	0.207	0.055	3.769	0.000	채택
가설 4. 비공식통제→ 순응	0.082	0.078	1.048	0.294	기각
가설 5. 공식통제→ 기회주의	0.516	0.091	5.640	0.000	채택
가설 6. 비공식통제→ 기회주의	0.175	0.130	1.345	0.178	기각
가설 7. 공식통제→ 순응 (규제동의를의 조절효과)	-	-	1.546	0.1011	기각
가설 8. 비공식통제→ 순응 (규제동의를의 조절효과)	-	-	1.034	0.1998	기각
가설 9. 공식통제→ 기회주의 (규제동의를의 조절효과)	-	-	2.207	0.049	채택
가설 10. 비공식통제→ 기회주의 (규제동의를의 조절효과)	-	-	2.056	0.035	채택

제 5 절 분석결과의 논의

본 연구는 분석모형에 따른 주요 구성개념들의 관계, 즉 학교급식에 있어서 식품위생규제의 역할수용이 통제과정에 따른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작성하여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이론적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분석과정에서 도출한 중요한 결과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특성별 차이분석 결과의 검토

본 연구는 식품위생규제의 통제과정이 규제통제의 반응, 즉 순응과 기회주의적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나 변수들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Ajzen과 Fishbein(1980: 8-9)의 주장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개인특성변수와 같은 외부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변수들이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규제통제의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즉 외부변수들 중에서 분석모형의 변수들 중 하나 이상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규제통제의 반응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Ajzen과 Fishbein, 1980: 82). 외부변수들의 잠재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실시한 학교급식종사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와 규제통제과정 및 그 영향요인과의 평균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IV-11>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인 99.4%가 여성이므로 성별에 따른 두 집단간의 차이분석은 의미가 없어 검증을 하지 않았으며, 연령, 학력, 직급, 그리고, 재직기간에 따른 세 집단 이상간의 차이분석은 F검증을 사용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회주의에서 각 연령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나, 역할수용,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규제동의, 순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즉 연령이 많은 학교급식 종사원일수록 기회주의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연령별에 대한 사후분석의 결과 순응 변수에서 평균에 유의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연령층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령 차이는 기회주의 변수에 대해서만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을 예측하는 외부변수로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별에 대한 사후분석의 결과 공식통제 및 규제동의 변수에서 평균에 유의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학력층이 발견되었다. 학력은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을 예측하는 외부변수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직급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규제동의 및 기회주의 변수에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사후분석의 결과, 역할수용, 공식통제, 규제동의 기회주의에서 평균에 유의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직급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직급 차이는 규제동의 및 기회주의 변수에 대해서만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을 예측하는 외부변수로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직급이 높은 학교급식 종사원일수록 식품위생규제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만 정작 순응하기 보다는 기회주의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직책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평

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후분석의 결과에서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직책이 발견되지 않았다. 직책은 규제대상집단의 반응을 예측하는 외부변수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할수용, 공식통제, 기회주의 변수에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재직기간이 많은 학교급식 종사원일수록 역할수용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으며, 공식통제에 대한 인식이 강하며, 더 많은 기회주의 성향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재직기간에 대한 사후분석의 결과 역할수용, 공식통제, 기회주의 변수들에서 평균에 유의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재직기간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재직기간 차이는 역할수용, 공식통제, 기회주의 변수에 대해서만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을 예측하는 외부변수로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른 외부변수 중에서 재직기간과 직급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연구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아주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력 및 직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jzen과 Fishbein(1980: 82)은 분석모형의 변수들 중 하나 이상과 외부변수가 관계가 있을 경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재직기간, 직급, 그리고 연령은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외부변수로서 부분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외부변수 역시 분석모형에 대하여 중요한 참고 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Ajzen과 Fishbein, 1980: 8-9),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의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1개의 외생변수와 3개의 매개 내생변수가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행위를 전적으로 설명하는 근본적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2. 분석모형 및 가설검증 결과의 검토

본 연구의 분석모형의 부합도를 다양한 부합지수로 판정한 결과 자료와 부합도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경로계수와 고정지수를 가지고 검증한 결과 역할수용이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공식통제는 순응 및 기회주의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모형의 가설에서 설정한 조절변수의 방향 즉 규제동의 변수는 기회주의 행태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 및 가설의 검증결과는 당초 의도하였던 본 연구의 목적을 일정부분 지지하였다. Fishbein과 Ajzen이 외부적 요인들이 구성개념을 통하여만 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가정하여 모형을 단순화시킨 반면에, 본 연구는 Fishbein과 Ajzen의 모형이 간과한 영향 요인으로써 외부적 변수 특히 규제동의, 직급, 그리고 재직기간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촉진요인이라는 구성개념을 도입하여 외부요인들의 중요성을 일깨운 Triandis의 모형과 일치한 결과를 내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에 대한 규제대상 집단의 역할수용이 규제기관의 규제통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모형의 역할수용이 규제통제행태 즉 공식통제(0.263) 및 비공식통제(0.418)를 예측하는 설명력에 있어 <표 I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두 가설들은 모두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규제대상 집단이 규제기관을 인정하고 지지하면 규제기관과 규제대상 집단 사이에 공동연대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역할수용은 규제기관의 사명중의 하

나인 공식통제도 인정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통제의 행태에 따른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을 예측하는 설명력에 있어 <표 I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통제 변수는 순응(0.207) 및 기회주의(0.516)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기관의 공식통제가 증가하면 규제대상 집단은 규제집행기관의 정책 집행에 순응하지만 동시에 기회주의 행태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비공식통제 변수는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기관이 규제대상 집단에 사회 지도와 조언들을 제공하더라도, 그들이 그 제안들을 실천하고 변화가 요구되더라도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규제통제와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 사이의 관계가 규제에 대한 동의정도에 따른 조건부이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규제동의 정도를 조절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식통제와 순응에 대한 규제동의의 조절효과 및 비공식통제와 순응에 대한 규제동의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통제와 기회주의에 대한 규제동의의 조절효과 및 비공식통제와 순응에 대한 규제동의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에 대한 동의가 규제통제와 기회주의 행태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공공정책 및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집단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줄이고 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 관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중요한 점은 학교급식규제에 대한 동

의정도가 규제통제와 기회주의 행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식품안전규제에 대한 규제대상 집단의 동의수준 여하에 따라 규제기관의 규제집행의 유형도 달라져야 함을 시사해 줌을 알 수 있다. 즉, 규제대상 집단이 식품안전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공식통제 및 비공식통제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하지만 규제대상 집단의 동의수준이 높은 경우 규제기관이 공식통제 또는 비공식통제를 활용하더라도 급식소들의 불응 즉, 기회주의적 행태에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규제기관이 규제대상 집단에게 각종 교육(법규준수교육, 안전교육 등)이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하여 규제대상 집단의 동의수준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기관들은 교육과 기타 정보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식품안전규제 환경에서 공식적인 규제 및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기회주의는 안전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대상 집단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이들이 교육을 받고 그 대가로 안전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지역보건당국들은 무료 또는 적은 비용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규제의 일종인 식품안전규제에 있어서는 본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공식규제 내용의 타당성과 집행의 일관성, 벌칙의 강도와 적발가능성 등이 규제대상 집단의 동의를 능가하는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Antle, 1996).

일반적으로 공식통제는 한 기관의 권력 우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비공식통제는 수평적 의존관계를 지니는 교류나, 다른 유대강화를 위한 노력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통제에 대한 증

거를 통제자가 법적으로 권력우위를 누리고 있는 비대칭적 의존상황에서 탐색해 보았다. 규제환경에서 통제의 중요한 측면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과학이론들이 규제통제의 효과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통제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기회주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칙의 강도나 위반행위의 적발가능성 등은 기회주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일 수 있다. 이들 상황요인들에 따라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식통제가 순응 및 기회주의 행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회주의 행태에 대한 공식통제방법의 유용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들을 포함한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통제에 관한 연구모형의 설정에 있어서 관련되는 변수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규제에 대한 규제대상 집단의 동의는 통제자와 그 대상집단 사이의 공통의 토대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동의정도는 통제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ing과 Van de Ven, 1994). 또한 신뢰, 상호의존성, 공유된 목표 등 관계성의 구성개념과 정치풍토, 산업변동, 자금의 풍족함 등 환경측면 등을 규제통제의 예견인자로 고려하면 추가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회주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제대상 집단들의 행위는 그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의 동의 같은 태도 측면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jzen과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이 규제에 대한 대상집단의 태도를 파악하는데 적용될 수 있고, 규제자들이 규제대상 집단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기회주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설득전략 이론들(Cialdini, 1988; Howard 외, 1996; Schenk와 Ahelson, 1977)도 규제자들이 규제대상 집단의 기회주의 행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규제통제를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로 단순화 하였는데, 이것은 규제통제의 방법을 지나치게 간소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규제통제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규제통제 내에서도 기타 하위 통제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다. Heide(1994)는 통치 과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여섯 가지란 기획, 조정, 역할 구체화, 유인, 감독, 준수강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규제통제의 유형을 더 세분화하여 검증해 본다면 보다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식품위생규제의 반응에 관한 연구이다. 즉, 학교급식 종사자의 규제기관에 대한 역할수용이 규제통제과정에 따른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작성하여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이론적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모형의 부합도를 다양한 부합지수로 판정한 결과 자료와 부합도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경로계수와 고정지수를 가지고 검증한 결과 역할수용이 비공식통제와 공식통제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공식통제는 순응 및 기회주의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모형에서 조절변수로 설정한 규제동의 변수는 기회주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인간행태의 이론모형 중의 하나인 Fishbein과 Ajzen의 합리적 행동이론이 간과한 외부적 변수 특히 규제동의, 직급, 그리고 재직기간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촉진요인이라는 구성개념을 도입하여 외부 요인들의 중요성을 일깨운 Triandis의 모형과 일치한 결과를 내보이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에 대한 규제대상 집단의 역할수용이 비공식통제(0.418)와 공식통제(0.263)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비공식 통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규제대상 집단이 규제기관을 인정하

고 지지하면 규제기관과 규제대상 집단 사이에 공동연대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역할수용은 규제기관의 사명중의 하나인 공식통제도 인정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규제통제행태에 따른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을 예측하는 설명력에 있어 비공식통제 변수는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기관이 규제대상 집단에 사회지도와 조언들을 제공하더라도, 그들이 그 제안들을 수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공식통제 변수는 순응과 기회주의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기관의 공식통제가 증가하면 규제대상 집단은 규제대상 집단의 정책집행에 순응하지만 기회주의 행태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규제통제와 규제대상 집단의 반응 사이의 관계가 규제에 대한 동의정도에 따른 조건부이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동의정도를 조절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제동의를 규제통제와 기회주의 행태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규제기관이 규제대상 집단에게 더 많은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동의수준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집단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줄이고 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 관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식품안전규제가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감안할 때, 보다 효과적인 안전전략을 세우는 것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의 적절한 연구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규제동의가 규제통제와 기회주의 행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급식규제에 대한 기회주의 행태를 줄이고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 집단에 대한 각종 교육 등을 통하여 규제동의 수준을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식품안전규제 환경에서 공식규제와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암시하고 있다. 기회주의는 안전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대상 집단에 대한 공식규제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교육을 받고 그 대가로 안전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규제의 일종인 식품안전규제에 있어서는 본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공식규제 내용의 타당성과 집행의 일관성, 벌칙의 강도와 적발가능성 등이 규제대상 집단의 동의를 능가하는 중요한 이슈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식통제는 한 기관의 권력 우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비공식통제는 수평적 의존관계를 지니는 교류나, 다른 유대강화를 위한 노력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통제에 대한 증거를 통제자가 법적으로 권력우위를 누리고 있는 비대칭적 의존상황에서 탐색해 보았다. 규제 환경에서 통제의 중요한 측면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관련 사회과학이론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주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칙의 강도나 위반행위의 적발가능성 등은 기회주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일 수 있다. 이들 상황요인들에 따라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식통제가 순응 및 기회주의 행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회주의 행태에 대한 비공식통제방법의 유용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들을 포함한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통제에 관한 연구모형의 설정에 있어서 관련되는 변수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규제에 대한 규제대상 집단의 동의는 통제자와 그 대상집단 사이의 공통의 토대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동의정도는 통제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신뢰, 상호의존성, 공유된 목표 등 관계성의 구성개념과 정치풍토, 산업변동, 자금의 풍족함 등 환경측면 등을 규제통제의 예견인자로 고려하면 추가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회주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제대상집단들의 행위는 그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의 동의 같은 태도측면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리적 행동이론이 규제대상 집단의 태도를 파악하는데 적용될 수 있고, 규제자들이 규제대상 집단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기회주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설득전략 이론들도 규제자들이 규제대상 집단의 기회주의 행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규제통제를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로 단순화 하

였는데, 이것은 규제통제의 방법을 지나치게 간소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규제통제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규제통제 내에서도 기타 하위 통제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다. Heide(1994)는 통치 과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여섯 가지란 기획, 조정, 역할 구체화, 유인, 감독, 준수강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규제통제의 유형을 더 세분화하여 검증해 본다면 보다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신태. (1981).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서울: 박영사.
- 권오돈. (2001). 「성과행정의 이해와 실제」. 서울: 법문사.
- 규제개혁위원회. (1999). 「국민의 정부-규제개혁의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 (2003). 「규제개혁백서」.
- 김태윤·김준모·심미승. (1999). 「규제대안 개발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호정. (1994). 「행정통계학」. 서울: 삼영사.
- 남궁근. (1999).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박성현·조신섭·김성수. (1999). 「통계자료분석을 위한 한글 SPSS」. 서울: 고려정보산업.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1999). 「Codex 식품위생기본서」.
- 소영일. (1994).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박영사.
- 안해균. (2002). 「정책학원론」. 서울: 다산출판사.
- 오원택. (1995). 「최근식품위생관리제도」. 서울: 홍익기술출판.
- 유 혼. (1988).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준형. (1998). 「통계분석」. 서울: 대영문화사.
- 장관식·곽덕희. (1999). 「현대식품위생학」. 서울: 도서출판 삼원.

- 정영일·황수철 편. (2000). 「식품안전 및 환경문제에 대한 농업의 대응」. 서울: 사단법인 농정연구포럼.
- 정정길. (1988). 「정책결정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정길. (200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조선배. (199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허준·최인규. (2000). 「구조방정식 모형과 경로분석」. 서울: 고려정보산업.
- 현기순. (1987). 「단체급식」. 서울: 수학사.

2. 논문

- 강명희·김은경. (1995). 급식실태 조사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전략. 「1995년도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대한영양사회·한국영양학회.
- 강영재. (1993). H.A.C.C.P.란 무엇인가? 「식품과학과 산업」. 26(3): 4-16.
- 곽동경. (1999). 급식산업의 HACCP 도입 필요성 및 발전 방향. 「식품산업과 영양」. 4(3): 1-13.
- 곽동경. (2003). 학교급식 현황 및 식중독 예방대책.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7-35.
- 곽동경·문혜경. (2005). 미국의 학교급식 식품안전대책.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1(4): 473-484.
- 곽효문. (2002). 한국 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수렴·통제이론의 적용. 「한국정책분석학회지」. 제5권 제1호: 55-78.

- 김경주 · 한경찬 · 김영희. (1995).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합리화방안. 「1995년도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대한영양사회 · 한국영양학회.
- 김병준. (1984). 정책집행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제18권 제2호.
- 김병준. (1985). 정책집행에 있어 대상집단의 정책관여. 「한국정치학회보」. 제19집.
- 김수현. (2003).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신 · 김경희. (2002). 「행정규제의 질적 제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영숙. (2003). 학교급식의 위생현황 및 HACCP System 도입에 관한 중요성. 「식품과학과 산업」. 6월: 92-98.
- 김정유. (1994). 단속에 관한 사전예고의 사고예방효과에 대하여. 「경제연구」. 제10집.
- 김재홍 · 홍성중. (1993). 「정부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김종래. (1994). 한국의 행정규제에 있어서 순응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수질규제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윤. (1999). 「규제대안 개별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규제개혁위원회. (1999). 국민의 정부-규제개혁의 추진.
- 라중식. (1983). 정책집행모형 및 이론에 관한 연구. 부산산업대학 논문집. 제4집: 555-576.
- 민 진. (1985). 공공정책실패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19권 제1호.
- 박경효. (2001). 규제순응의 결정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법률행정논

- 집」. 제8권: 287-309.
- 박경효. (2003). 도시환경정책에서의 규제순응 향상에 관한 연구. 「법률행정논집」. 제10권: 100-119.
- 박상주. (1999). 교통안전 규제정책의 불응요인. 「현대사회와 행정」. 제8집: 167-188.
- 박소영. (2002). 「식품위생행정의 규제체제 및 실효성 확보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점모. (1996). 해상여객운송조직의 정책불응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전북행정학보」. 10(1): 39-65.
- 부만근. (1996).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연구: 비선호시설의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 제2호: 267-288.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3). 식중독 발생현황 통계. <http://www.kfda.go.kr>.
- 심상인. (2002). 국내외의 농식품 안전관리 추진동향. 「농산물 안전성 조사의 올바른 이해」. 농림부.
- 심정택. (1998). 범죄와 사회통제 메커니즘. 「사회과학논집」. 제15집: 455-478.
- 안문석. (1987. 12). 「우리나라에서의 정부규제강화요인에 관한 연구」. 전국경제인연합회.
- 양병우 · 엄영숙. (2001). 식품안전성 관리제도와 정책과제. 「월례세미나 시리즈 No.101」.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3-44.
- 오세윤. (1993). 「식품위생 규제기준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우지 사건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인환. (2002). 단체급식의 식품안전경영. 「식품산업과 영양」. 제7집 제1호: 27-33.
- 이경애. (2002). 「초등학교 학교급식이 아동의 식생활 및 사회성 발달에

-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권. (1991).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동
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안. (1989). 「정책대상집단의 규제불응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용 · 장영수 · 최희진. (1999). 우리나라의 HACCP제도 실시현황 및
추진전망. 「식품산업과 영양」. 4(3): 14-26.
- 이중범. (1988). 다원화시대에 있어서 행정의식의 문제점. 전국경제인연합
회(편). 「제6공화국과 정부규제 합리화 추진방향」.
- 이중엽. (2003). 「의약분업정책의 정책수용성 평가: 정책수용성 확보전략
평가를 중심으로」. 21c 거버넌스 시대의 한국행정학과 정책
학.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중영. (2004).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품규제의 한계. 「중앙법학」. 제6집
제4호: 33-57.
- 이중영. (2005). 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성 확보제도. 「중앙법학」.
제7집 제2호: 41-61.
- 이희석. (2002).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HACCP시스템 도입방안에 대
한 연구」.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나. (1997). 「식품위생행정의 공법적 고찰: 현행 식품위생법을 중심
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화춘. (1998). HACCP개념을 도입한 집단급식의 위생관리. 「한국식품
영양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집단급식에서의 위해요소와 안
전성 확보 대책」.
- 전영평 · 김영기 · 장임숙. (2003). 도시가스안전규제의 진화와 규제 방안.

- 「사회과학연구」. 11(1): 137-171.
- 정강정. (2002). 행정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제8권 2호.
- 정기혜. (2003). 식품안전관리체계 현황과 개선 방향. 「식품과학과 산업」. 6월호: 42-53.
- 정기혜 외. (2001).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 (2003). 「식품분야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용덕. (1983). 자유시장경제와 정부규제: 연구문제의 산정. 「한국행정학보」. 제18권 제2호.
- 조경동 · 이복희. (2004).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닭고기 주요리의 급식품질 확보를 위한 HACCP 시스템 적용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제20권 제1호: 63-75.
- 조 탁. (1994). 사회적 규제의 합리적 개혁. 「전환기의 정책과 재정관리」. 유훈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 주현식. (2004). 「식품위생관련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석조. (1993).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방식의 도입과 위생관리지침의 작성예. 「식품과학과 산업」. 26(3): 17-31.
- 최병선 · 이혜영. (2001). 한국의 규제정책 분야 실증연구의 경향과 분석. 「행정논총」. 제39집 3호.
- 최성락. (2005). 「식품위생 규제합리화 방안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남제 · 김철수. (1988). 사회통제 개념의 변화. 「평화연구」. 제13집: 5-24.
- 한두봉 · 김만근. (1997). 식품안전의 가치와 정책방향. 「사단법인 농정포럼 제54회 월례세미나결과보고서」. 3-23.
- 한승준. (2002). 서울시 무료통역 택시제도의 정책순응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12(3):
- 함철호. (1986). 「한국사회복지에 대한 사회통제이론적 고찰 : 복지법과 복지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 범. (1982). 정책의 수용성과 행정의 민주화. 「현대사회」. 겨울.

II. 국외문헌

1. 단행본

- Almond, Gabriel A. and Powell, G. Bingham. Jr. (1978).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Boston: Little, Brown and Co.
- Anderson, James E. (1984). *Public Policy-Mak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ardach, Eugene. (1979). *The Implementation: What Happens After a Bill Becomes a Law*. Cambridge, Mass: MIT Press.
- Baumol, William J. and Oates, Wallace E. (1979). *Economics,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Quality of Lif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lack, Donald. (1976).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 Brannen, Julia. (1992). *Mixing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Aldershot, London: Avebury.
- Brecher, J. and Nestle, M. (1970). *Environmental Law Handbook*. Berkeley: Continuing Education of the Bar.
- Cialdini, Robert B. (1988). *Influence: Science and Practice*. 2nd Ed. Glenview, IL: Scott Foreman.
- Deutsch, Karl W. (1980). *Politics and Govern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Duncan, Jack W. (1981). *Organizational Behavior*.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Etzioni, Amitai. (1968). *The Active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Fishbein, Martin. & Ajzen, Icek.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Greer, Douglas F. (1987). *Business, Government, and Societ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Hair, Joseph F. Jr., Anderson, Rolph E., Tatham, Ronald L., & Black, William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5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 James, D. E., Jansen, H. M. A., and Opschoor, J. B. (1978). *Economic Approaches to Environmental Problems*. Amsterdam: 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 Kanter, Rosabeth. (1972). *Commitment and Community: Communes and Utopia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cneil, Ian. (1980). *The New Social Control: An Inquiry into Modern Contractual Relatio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eier, Kenneth J. (1985). *Regulation: Politics, Bureaucracy, and Econom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 Mitnick, Barry M. (1980).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rrison, Alan and Noll, Roger G. (1980). *Government and the Regulation of Corporate and Individual Decision in the Eighties: A Panel Repor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Nunnally, Jum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OECD. (1997). *Improving the Cost-Effectiveness of Government: Innovative Approaches to Command-Control Regulation*. PUMA REG(97)6.
- OECD. (1999). *The Preliminary Report on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 PUMA/REG.
- OECD. (1999).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 Supporting Materials*. PUMA/REG.
- Peterson, H. Craig. (1985). *Business and Government*. New York: Harper

- Pressman, Jeffrey L. and Wildavsky, Aaron. (1973). *Implement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yle, David J. (1983). *The Economics of Crime and Law Enforcement*. New York: The Macmillan Press.
- Ripley, Randall B. and Franklin, Grace. (1982). *Bureaucracy and Policy Implementation*. Homewood, Ill: Dorsey Press.
- Rogers, Harrel R. and Bullock, Charles S. (1976). *Coercion to Compliance*.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 Savas, E. S. (1982).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How to Shrink Government*. Chatham: Chatham House. 34.
- Unnevehr, Laurian. (2003). *Cost and Benefits of Food Safety Regulation*. OECD.
- Young, Oran R. (1979). *Compliance and Public Authorit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 논문

- Achrol, Ravis S. and Gundlach, Gregory T. (1999). Legal and Social Safeguards Against Opportunism in Exchange. *Journal of Retailing*. 75(1): 107-124.
- Antle, John M. (1996). Efficient Food Safety Regulation in the Food Manufacturing Sector.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8(5).
- Ausness, Recharl C. (1996). The Case for a ‘Strong’ Regulatory Compliance Defence. *Maryland Law Review*. 55: 1210-1266.

- Balch, George I. (1980). The Stick, the Carrot, and Other Strategies: A Theoretical Analysi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Brigham, J. and Brown, D. W. (eds.), *Policy implementation: Penalties or Incentives?* (pp. 43-68). Beverly Hills, CA: Sage.
- Barrett, Dirk. (1995). Introduction: Product Liability Aspects of Innovation. *Canada-United States Law Journal*. 21: 305-306.
- Bello, Daniel C. and Gilliland. (1997). The Effects of Output Controls, Process Controls, and Flexibility on Export Channel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61(January): 22-38.
- Brathiwaite. John. (1993).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Strategies and Practical Application in OECD Countries*. PUMA Occasional Papers: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Series. No. 3.
- Burrows, Paul and Veljanovski, Cento G. (1981). *The Economic Approach to Law*. Butterworth.
- Challagalla, Goutam and Shervani, Tasadduq A. (1996). Dimensions and Types of Supervisory Control: Effects on Salesperson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60(January): 89-105.
- Coombs, Fred. (1981).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in Grumm, John G. and Wasby, Stephen L. (eds.).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 Lexington: Lexington Books.
- Dahlstrom, Robert and Nygaard, Arne. (1999).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x Post Transaction Costs in Franchised Distribution Channel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6(May): 160-170.

Davis, Otto A. and Kamien, Morton I. (1977). Externalities, Information, and Alternative Collective Action. in Dorfman, Robert and Dorfman, Nancy S. *Economics of Environment: Selected Readings*. New York: W. W. Norton and Co.

Ellickson, Robert C. (1987). A Critique of Economic and Sociological Theories of Social Control. *Journal of Legal Studies*. 16(January): 67-97.

Elmore, Richard F. (1978). Organizational Models of Social Program Implementation. *Public Policy*. Spring: 185-228.

Festinger, L. (1953). An Analysis of Compliant Behavior. in Sherif, M. and Wilson, M. O.(eds.). *Group Relations at the Crossroads*. New York: Harper & Row.

Fites, Donald V. (1996). Make Your Dealers Your Partners.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84-95.

Gatlin, Douglas S. Policy Support within a Target Group: The Case of School Desegreg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3).

Gerhardt, P. H. (1969). Incentives to Air Pollution Control. in Havighurst, C. H(ed.). *Air Pollution Control*. Dobbs Ferry: Oceana.

Giles, Michael W. and Gatlin, Douglas S. (1980). Mass-Level Compliance with Public Policy. *The Journal of Politics*. 42(August).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November): 481-510.
- Greenberger, David B. and Strasser, Stephen. (1996).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Model of Personal Control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1): 164-177.
- Gundlach, Gregory T. (1994). Exchange Governance: The Role of Legal and Nonlegal Approaches Across the Exchange Process.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13(2): 246-258.
- Gundlach, Gregory T. and Cadotte, Ernest R. (1994). Exchange Interdependence and Interfirm Interac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1(4): 516-532.
- Heide, Jan B. (1994). Interorganizational Governance in Marketing Channels. *Journal of Marketing*. 58(January): 71-85.
- Howard, Daniel J., Gengler, Charles, and Jain Ambju. (1996). What's in a Name? A Complementary Means of Persua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September): 200-211.
- Jaworski, Bernard J. (1988). Toward a Theory of Marketing Control: Environmental Context, Control Typ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Marketing*. 52(January): 23-39.
- Jaworski, Bernard J. and MacInnis, Deborah J. (1989). Marketing Jobs and Management Controls: Toward a Framework.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6(November): 406-419.
- Jaworski, Bernard J., Stathakopoulos, Vlasis, and Krishnan, H. Shanker. (1993). Control Combinations in Marketing: Conceptual Framework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 Marketing*. 57(January): 57-69.
- Jensen, Gary F. (1968). Crime Doesn't Pay: Correlate of a Shared Misunderstanding. *Social Problems*. 17(Fall): 189-201.
- John, George. (198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ome Antecedents of Opportunism in a Marketing Channel.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1(August): 278-289.
- Kaufmann, Patrick J. and Stern, Louis W. (1988). Relational Exchange Norms, Perceptions and Unfairness, and Retained Hostility in Commercial Litigation. *Journal of Conflict*. 32(September): 534-532.
- Kerr, Donna H. (1976). The Logic of Policy and Successful Policies. *Policy Science*. 7: 351-363.
- Kumar, Nirmalya, Stern, Louis W., and Achrol, Ravi S. (1992). Assessing Reseller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pplie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9(May): 238-253.
- Laufer, Williamson S. and Robertson, Diana C. (1997). Corporate Ethics Initiatives as Social Control.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10): 1029-1048.
- Lilley, William and Miller, James C. (1977). The New Social Regulation. *Public Interest*. Spring.
- Lowi, Theodore J. (1964).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16(July): 678-691.
- Lowi, Theodore J.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July/August):

300-323.

- MacDonald, James M. and Crutchfield, Stephen. (1996). Modeling the Costs of Food Safety Regul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8: 1285-1290.
- Meier, Kenneth J. and Morgan, David R. (1982). Citizen Compliance with Public: The National Maximum Speed Law.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5(June).
- Meyer, John P. and Allen, Natalie J. (1991).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1): 61-89.
- Mitnick, Barry M. (1980).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hr, Jakki J., Fisher, Robert J. and Nevin, John R. (1996). Collaborative Communication in Interfirm Relationships: Moderating Effects of Integration and Control. *Journal of Marketing*. 60(January): 103-115.
- Morgan, Robert M. and Hunt, Shelby D. (1994). The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58(July): 20-38.
- Morrison, Elizabeth W. and Robinson, Sandra, L. (1997). When Employees Feel Betrayed: A Model of How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Develop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2(1): 226-256.
- Narus, James A. and Anderson, James C. (1996). Rethinking Distrib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12-120.

- Neiman, Max. (1980). The Virtues of Heavy-Handedness in Government. in Brigham, J. and Brown, D. W. *Policy Implementation: Penalties or Incentiv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Ouch, William G. (1979).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Design of Organizational Control Mechanism. *Management Science*. 25(9): 833-848.
- Pollitt, Ernesto., Gersovitz, Mitchell., and Gargiulo, Marita. (1978). Educational Benefits of the United States School Feeding Program: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68(5): 477-481.
- Quinn, Robert E. and Rohrbaugh, John. (1983). A Spatial Model of Effectiveness Criteria: Towards a Competing Values Approach to Organizational Analysis. *Management Science*. 29(3): 363-377.
- Ring, Peter Smith and Van De Van, Andrew H. (1994). Developmental Processes of Cooperative Inter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1): 90-118.
- Roberts, Tanya, Buzby, Jean C., and Ollinger, Michael. (1996). Using Benefit and Cost Information to Evaluate a Food Safety Regulation: HACCP for Meat and Poultry.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y*. 78: 1297-1301.
- Rodriguez, Daniel B. (1994). The Positive Political Dimensions of Regulatory Reform.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72(Spring): 1-73.

- Rossi, Jim(1997). Participation Run Amok: The Costs of Mass Participation for Deliberative Agency Decision Making.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92(Fall): 173-249.
- Stein, Robert M. (1984).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ederal Aid System: The Case of Grant Policy. in Edwards, George C.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London: Jai Press Inc.
- Stover, R. V. and Brown, D. W. (1975). *Understanding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with Law: The Contributions of Utility Theory*. *Social Science Quarterly*. 56(December): 363-375.
- Thonney, Patricia F. and Bisogni, Carole A. (1991). Food Safety Policy: A Shared Responsibility. *Human Ecology*. 19(2): 13-15.
- van Horn, Carl E. and Van Meter, Donald S. (1976). The Implementation of Intergovernmental Policy. in Johns, C. O. and Thomas, R. D. (eds.). *Public Policy Making in a Federal System*.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van Meter, Donald S. and Van Horn, Carl E. (1975).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 Conceptual Framework. *Administration and Society*. 6(4).
- van Ravenswaay, Eileen O. and Hoehn, John P. (1996). The Theoretical Benefits of Food Safety Policies: A Total Economic Value Framework.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8: 1291-1296.
- Vogel, David. (1981). The New Social Regulation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in McCraw, Thomas K. (eds.).

Regulation in Perspective: Historical Essay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55-185.

Williamson, Oliver E. (1991). Comparative Economic Organization: The Analysis of Discrete Structural Alternativ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6(June): 269-296.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번거로운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본 설문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식품위생규제에 관한 모형을 개발하는데 이용됩니다. 선생님의 귀중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응답은 본 연구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하게 통계적으로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자료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각 설문에 해당하는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읽으신 다음 각 설문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5. 7. .

지도교수: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박희서
연구자: 조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복지정책)
박사과정 권성옥 전화: 011-628-1821

※ 설문의 내용은 역할수용,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기회주의, 규제에 대한 동의, 그리고 개인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 ② 그들은 규정해석에 있어서 . 1---2---3---4---5---6---7
대단히 엄격하다
- ③ 그들은 위반사항을 언급할 때 1---2---3---4---5---6---7
법문에 너무 집착한다.

III. 비공식통제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우리 급식소 검사기간에 규제기관 검사원들은

- ① 급식소관리인들에게 식품안전과 1---2---3---4---5---6---7
관련하여 많은 조언을 해준다.
- ② 그들은 적용 규칙과 규제에 대해 1---2---3---4---5---6---7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 ③ 그들은 더 안전한 식품 준비와 1---2---3---4---5---6---7
저장에 관해 제안하고 정보를 제공해 준다.

IV. 규제에 대한 동의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식품안전규제에 관해

- ① 전반적으로 우리는 규제가 1---2---3---4---5---6---7
우리 산업에 유익하다고 믿는다.
- ② 우리는 규정집에 있는 그대로 1---2---3---4---5---6---7
규제에 동의한다.
- ③ 우리는 규제가 공중을 보호하기 1---2---3---4---5---6---7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다.

V. 순응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식품안전규제에 관해

- ① 검사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1---2---3---4---5---6---7
- ② 식품안전에 관해 더 주의하게 된다. 1---2---3---4---5---6---7
- ③ 지적한 사항에 따라 요건을 개선시킨다. 1---2---3---4---5---6---7

VI. 기회주의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나는 솔직히 검사과정을 거친 결과

- ① 검사자의 코멘트와 제안을 1---2---3---4---5---6---7
간과해 버린다.
- ② 검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1---2---3---4---5---6---7
식품안전에 관해 더 주의하지 않게 된다.
- ③ 검사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상황을 1---2---3---4---5---6---7
약간 다르게 대변하게 된다.

VII. 개인특성

※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해당 괄호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 ① 30세 미만() ② 30세-35세() ③ 36세-40세()
④ 41세-45세() ⑤ 46세 이상()

3. 학력

- ① 고졸 이하() ② 대학졸() ③ 대학교졸() ④ 대학원졸()

4. 직급

-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5. 직책

- ① 영양사() ② 조리사()

6. 재직기간

- ① 3년 이하() ② 4년-9년() ③ 10년-14년() ④ 15년 이상()

대단히 감사합니다.